

백제왕도핵심유적
정책연구포럼



2021.10.25.(월)
익산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고증연구의
개선방안 모색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추진단

2021년 제2차 백제왕도핵심유적 정책연구포럼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고증연구의
개선방안 모색

2021.10.25.(월) 13:30-17:00

익산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

프로그램

2021.10.25.(월) | 익산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

[개회식]

사회: 김승대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학예연구관

개회사

조성래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장

13:30-13:40

인사말

배병선 백제왕도핵심유적 정책연구포럼 부위원장

[1부] 발표

13:40-14:20

법과 사례를 통해 본
복원고증연구의 방향

송길상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학예연구관

14:20-14:40

휴식

[2부] 토론

14:40-17:00

자유토론

[좌장] 배병선 백제왕도핵심유적 정책연구포럼 부위원장
[토론자] 참여위원 전체

17:00

폐회



문화재청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추진단

목 차

발 표

• 법과 사례를 통해 본 복원고증연구의 방향

01

송길상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학예연구관

부 록

1.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계유산법)	45
2.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51
3.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 ·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59
4.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63
5. 기념물과 유적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국제 협약(베니스 협약, 1964)	73
6.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1994)	77
7. 기념물, 건물군과 유적 기록에 관한 원칙(1996)	81
8.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진정성과 역사적 재건에 관한 리가 협약(2000)	85
9.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협약 - 건축 유산의 분석, 보존과 구조적 복원에 대한 원칙(2003)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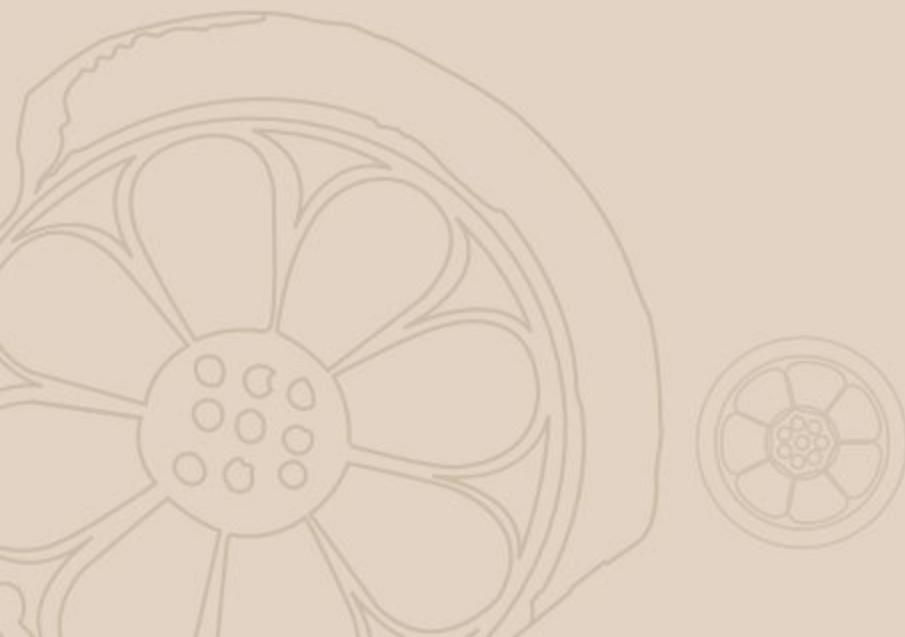


발표

법과 사례를 통해 본 복원고증연구의 방향

송길상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학예연구관



법과 사례를 통해 본 복원고증연구의 방향

송길상

백제왕도 추진단 학예연구관

1. 서론
2. 법령 및 각종 협약
 - 1) 국내 관련 법규 사항
 - 2) 국제협약 및 협정
3. 복원고증연구 사례검토
 - 1) 국외 복원 관련 규정 및 사례
 - 2) 국내 고증복원 연구 사례
4. 맺음말

1. 서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은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백제유적의 체계적 보존·정비와 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사업대상으로는 공주·부여·익산 지역 내 백제역사유적지구 9개소와 왕궁, 왕릉, 사찰 등 왕도 필수요소 11개소, 기타 외곽유적 6개소를 포함 총 26개소의 유적에 대해 토지매입, 고증연구 및 발굴조사, 복원 및 정비를 통해 2038년 왕도의 골격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절차로는 핵심유적에 대한 문화재 구역지정, 토지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연구, 복원·정비를 통해 고도 백제의 위상을 회복하여 역사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

지난 5월 ‘복원 고증 연구의 진단과 방향제시’라는 주제로 황룡사와 공산성의 고증연구 진행 상황과 성과에 대한 포럼을 진행한 바 있다. 당초 포럼의 목적은 그 동안 진행되어온 고증연구 사례를 통해 앞으로 백제왕도 고증연구 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 회의에서 고증연구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고증복원 연구의 지침이나 향후 연구방향 까지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에 포럼 이후 열린 백제왕도핵심유적 정책연구포럼 운영위원회에서 고증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오늘의 포럼을 통해 ‘법’과 그 동안의 고증연구 ‘사례’를

검토해 보고 오늘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백제왕도 핵심유적 고증복원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법령 및 각종 협약

1) 국내 관련 법규 사항

우리가 정비하려하는 백제왕도 26개 핵심유적 대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¹⁾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역사문화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²⁾

또한 백제왕도 26개 핵심유적 중 9개 유적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³⁾에 따른 기준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⁴⁾을 제정하여 올해 2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위 법의 기본취지는 등재 당시의 완전성 및 진정성을 포함하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지되거나 향상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⁵⁾

문화재청장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에 대해 세계유산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구역에 대해 세계유산 완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⁶⁾

지정된 세계유산구역에 대해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⁷⁾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⁸⁾

1)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2)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3)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17차 유네스코총회(1972년 11월 16일)에서 채택되었으며 운영기구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이며 우리나라는 1988년 12월에 가입하였다.

4) 약칭으로는 '세계유산법'이라 불리며 2021.1.5.일 시행되었다.

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본이념)

6) 위 법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종합계획의 수립)

8)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

세계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세계유산구역 보호되고 있으며⁹⁾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유지·관리와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 점검활동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¹⁰⁾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때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¹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사적의 종합정비계획 및 시행에 관하여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지침¹²⁾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비계획 수립시 문화재보호법상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학술 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무분별한 복원을 지양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의 관계법령, 주변상황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수립에 노력하여야 하고¹³⁾ 정비계획의 수립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

1. 사적의 유형별·시대별·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재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9)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 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세계유산 등의 보호) 유산의 완충구역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라 시도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안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그 공사의 안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세계유산구역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문화재별 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정비계획에는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공주·부여·익산지역의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소재한 지역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고도로 지구지정되어 있으며 고도보존 육성 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관리되고 있다.

12)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문화재청 2009.9. 24. 예규 제77호 제정

13) 위 지침 제3조

14) 위 지침 제9조

2. 역사적 사실과 연구고증을 바탕으로 보수·정비를 추진한다.
3.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타당성·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한다.
4.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사업 및 활용 등 추진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5.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한다.
6. 사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외에도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활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문화재의 가치 및 효용성을 높인다.
7.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객관적 사고를 견지하여야 한다.
8. 사적과 그 세부유형별·종류별 문화재의 수리·복원·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사적의 관리단체는 사적 정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방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¹⁵⁾

- 가. 기존 사적이 더 이상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존·정비한다.
- 나. 사적이 붕괴 위험 등으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적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강 조치한다.
- 다. 사적의 일부가 손·멸실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존과 동일한 재료와 수법, 양식 등을 사용하여 원형에 충실히 보수 정비한다.
- 라. 사적의 특성과 그 보존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출 정비, 복토 정비, 보호구조물 설치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또는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비한다.
- 마. 사적의 복원은 그 본래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지양하되,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진정성 및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진한다.

이 지침 및 문화재의 보수 정비 및 복원 등과 관련하여 우선 수리·보존·보강·복원 등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¹⁶⁾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5) 위 지침 제10조

16) 문화재청 고시 제2209-74호. 2009년 9월 3일 제정. 이 일반원칙은 세계유산에 관한 국제기구의 국제현장과 권리·보존·복원 및 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실천규범을 반영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호 현실에 맞게 제정하였다.

1. 역사적 건축물(歷史的 建築物) : 과거에 형성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 가치가 있는 건축유산
2. 유적(遺蹟) : 과거에 형성된 삶의 흔적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있는 구조물 또는 장소
3. 보존(保存)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
4. 수리(修理)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대로 고치는 행위
5. 보강(補強)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견고히 하는 행위
6. 수복(修復) : 문화재의 원형을 부분적으로 잃거나 훼손된 경우 고증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행위
7. 복원(復原)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8. 이건(移建) :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다른 장소에 옮기는 행위

이 지침의 제정 목적은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와 복원 등에 관한 제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유적의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의 바람직한 보존 · 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⁷⁾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와 복원에 관한 일반원칙’은 ‘베니스 현장’과 ‘진정성에 관한 나라(奈良)문서’ 등을 비롯한 기존의 국제현장과 원칙에서 정한 기준을 존중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마련된 기준으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바람직한 보존 · 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존을 통하여 국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에서 유적의 보존은 원형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원보다 수복이, 수복보다 수리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수리 · 수복 및 복원의 차별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¹⁸⁾ 규정하고 있다.

유적의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는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적의 가치를 변형 · 왜곡하지 않아야 하고 유적의 가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일체로서 완전성을 갖추어야 하며 주변 및 전체와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¹⁹⁾을 규정하고 있어 진정성과 완전성에 기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17) 위 고시 제1조(목적)

18) 위 고시 제4조(보존의 단계)

19) 위 고시 제5조(진정성과 완전성)

또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에서는 유적의 수리와 복원에 관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유적의 수리와 관련한 원칙으로는 유적의 수리·보강 및 수복은 불가피 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손부분의 수리·보강 및 수복은 전체와 조화되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교체 및 보충재는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²⁰⁾ 전통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보강은 유적의 모습 및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²¹⁾

반면 복원에 관해서는 고증에 의하여 충분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유적의 복원은 지상 또는 지하에 남아 있는 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²²⁾ 을 복원의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적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²³⁾ 하고 있다.

앞서 검토한 내용 중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 볼 부분은 복원에 대한 용어이다. 우리가 오늘 포럼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복원고증 연구이기 때문에 복원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리와 개념의 합의가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문화재보호법상의 '복원'은 문화유산 중 그 결실부분을 재건(Reconstruction)하는 행위와 유구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존하지 않는 건물을 유적지 위에 복원(Restoration)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한 국내 문화재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에는 사적지 내 유구의 원형보존과 이의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역사속으로 사라진 건물의 상부구조의 복원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복원이라는 용어에 'Reconstruction'과 'Restoration'이라는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다면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고증연구에서 유적지 내 복원의 개념은 재건의 개념이 강한 'Reconstruction'보다는 'Restoration'으로 한정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규정하고 있듯 복원은 고증에 의해 충분한 '증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복원고증연구의 목적은 연구를 통한 향후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며 그동안의 연구는 훼손되어 없어져버린 지상구조물의 현지 복원을 전제로 진행되어 왔다. 복원고증 연구는 소멸되어 사라져버린 고대의 건조물을 고증 연구를 통해 새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다.

20) 위 고시 제8조(수리의 원칙)

21) 위 고시 제10조(전통기술과 재료의 사용)

22) 위 고시 제11조(복원의 원칙)

23) 위 고시 제12조 (복원의 제한)

이 연구에서의 핵심은 이미 멸실되어버린 고대의 건축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시작되어진 사업이다. 복원의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인 유적의 '원형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복원의 방법이 유적의 '진정성'에 기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고대 건축물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증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작성된 복원안에 의한 복원건물이 '진정성'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문화재보호법이나 이와 관련한 여러 지침을 검토해 보면 유적의 보존과 복원은 '진정성'과 원형의 유지, 그리고 직접적 증거에 의해 검토 추진하여야 함을 복원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복원고증연구시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할 것이다.

2) 국제 협약 및 현장

유산에 관한 협약 중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협약은 유네스코에서 관리하는 협약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계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라 할 수 있다.

세계유산협약은 유네스코에서 체결한 국제협약으로 전 세계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가진 유산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고자 마련된 협약이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재해, 전쟁,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유산의 파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뛰어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의 등재 이후 금년 등재된 '한국의 갯벌'에 이르기까지 총 15건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는다는 의미와 함께 유산의 가치를 유지·전승하기 위해서 유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학술적·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제도 및 체계 개선을 통해 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각 당사국은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²⁴⁾ 유산의 보호에 협력하여야 한다.²⁵⁾

세계유산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이 협약에 근거해 보호 중인 지역에서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복원사업이나 신규 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허가하는 경우

24) 위 협약 제4조, 각 당사국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하는 유산을 보호, 보존, 활용하고 후대에 전승 보장하는 것이 우선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이 갖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적당한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모든 국제적 원조 및 협력, 특히 재정적, 예술적, 과학적 및 기술적 원조와 협력을 얻어 최선을 다한다.

25) 위 협약 제6조, 각 당사국은 본 협약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이 세계의 유산이라는 것, 따라서 그 유산의 보호에 협력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 의도를 사무국을 통해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²⁶⁾ 이 유산영향평가는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기 전 사업의 시행이 유산에 미칠 영향을 측정해 보는 도구이다.²⁷⁾

유산영향평가의 본질은 위험에 처한 유산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변화 또는 개발(안)이 OUV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영향은 어떻게 회피, 축소, 회복, 보상 될 수 있는가²⁸⁾로 요약할 수 있다.

유산영향평가의 단계별 절차는 개발 및 설계초안 → 초기 협의 → 평가를 수행할 적절한 기관 조사 및 선정 → 연구 범위 결정 → 작업 범위 설정 → 자료 수집 및 분석 → 유산의 특징, 특히 OUV를 전달하는 속성 파악 → 직간접적 영향분석 및 평가 → 완화대책 초안 작성-회피, 축소, 회복, 보상 → 보고서 초안 작성 → 협의 → 평가결과 및 완화대책 조정 → 최종보고 및 설명-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 완화(대책적용) → 결과 및 획득된 지식의 전파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⁹⁾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설정된 작업범위에 대한 유산의 특징(OUV)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유적의 영향을 회피, 축소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토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우리나라가 관련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협약의 주 내용이 전 세계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보호를 취지로 하고 있는 만큼 협약이 마련한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유적의 복원고증 연구시에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³⁰⁾

우리나라는 세계유산협약 이외에도 많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많은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현장(Charter), 선언(Declaration) 등이 있다.

현장·선언, 권고 등은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원칙을 규정짓는 포괄적 문서이다. 그러나 유적 복원 연구를 위해서는 보존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추진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지금까지 채택된 현장 및 선언들 중 유적의 보존 및 복원과 연관성이 높은 현장 및 문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26)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72조

27) ICOMOS, 2011, Guidance on Heritage Impact Assessments for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문화재청에서는 2019년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유산영향평가 지침』을 번역 발간하였으며 유산평가 관련 내용은 이 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28) 문화재청,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유산영향평가 지침』, 2019, P19

29) 위 지침 PP42-43

30) 우리나라에는 위 협약의 성실한 준수를 위해 금년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중에 있다.

□ 기념물과 유적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국제 현장(베니스 현장, 1964)³¹⁾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
(The Venice Charter 1964)

건축과 유적에 대한 보존관리 규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문서로 가장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원칙이다. 문서에서는 추정에 의한 복원이나 추측에 의한 재건 작업은 지양해야 함을 설명하고 또한 재료와 물질에 대한 진정성 유지가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대변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보존·복원 시 유산의 진정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핵심내용

- 진정성에 기반한 유산의 보존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유적이나 건물의 역사적, 유형적 맥락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 여러 시대에 걸쳐 형성된 유산의 다양한 시대성을 존중해서 수리·보존해야 함.
- 기념물은 예술적 작품뿐 아니라 역사적 증거로 간주되어 보존되어야 함.
- 추정에 의한 복원은 허용되지 않음.
- 해당 기념 건조물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되 의미의 왜곡없이 이를 드러내어야 함.
- 발굴 유적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추측에 의한 재건 작업은 모두 배제되고 발견된 기존 부재의 재조립만이 허용이 됨.

이 현장에서는 기념건조물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목적은 기념 건초물의 미학적·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드러내는 것이며, 원래의 재료와 출처가 분명한 문서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두고 있다. 추측이 시작되는 순간 복원은 중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추가 작업은 건축적 구성에서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고 당대의 작업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든지 기념건조물의 복원 전과 후에는 해당 기념건조물에 대한 고고학적, 역사적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³²⁾

이것은 이 현장의 제정목적이 고대의 기념 건조물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하게 보호할 공동의 책임과 함께 유적의 진정성을 온전히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한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래의 재료와 기술을 존중해서 복원하되 만일 전통 수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명된 경우에 현대수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현대수법은 과학적·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31) 국립문화재연구소,『세계유산 보존관리 제도와 경주월성』, 2020, PP100-101 직접발췌 및 재인용

32) 베니스현장 제9조

또한 건물에 부여된 시대적 요소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유적의 원상, 원형 회복만을 강조한 것보다는 창건 이후 진행된 수리, 복구작업에 의해 부여된 요소들도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의 일부라는 것이다.

□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1994)³³⁾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1994)

유산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물리적 재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 기능, 용도, 언어 및 무형적 요소, 전통 기법이나 관리체계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으며,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접근을 확장한 문서로 국제규범 문서 중에서는 매우 드물게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그 내용이 반영되었다.

핵심내용

- 문화유산의 보존은 그 유산에 부여된 가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이 가치를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은 이러한 가치에 관한 정보의 출처가 신뢰성이 있거나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정도에 달려있다.
- 진정성의 이해는 문화유산의 모든 과학적 연구, 보존과 복원 계획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 관련 정보 자료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산에 부여된 가치에 관한 모든 판단은 문화에 따라 심지어는 같은 문화 속에서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고정된 기준으로 가치와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모든 문화에 대한 존중은 그것이 속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유산을 고려하고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 문화유산의 본질, 문화적 맥락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와 발전에 따라 진정성 판단은 정보 출처의 다양성의 정도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 그 출처의 측면은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사용과 기능, 전통과 기술, 위치와 주변 환경, 정신과 느낌, 그리고 다른 내적, 외적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 이러한 요소의 사용은 해당 문화유산의 세부적인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과학적 차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한다.
- 변화하는 가치와 환경에 맞추어 진정성 평가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³³⁾ 국립문화재연구소, 『세계유산 보존관리 제도와 경주월성』, 2020, P104 직접발췌 및 재인용. 이 문서만으로는 구속력이 없지만 2005년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반영됨으로써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문화유산과 관련된 진정성과 역사적 재건에 관한 리가 현장(2000)³⁴⁾

Riga Charter on Authenticity and Historical Reconstruction in Relationship to Cultural Heritage(2000)

유네스코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채택된 대부분의 현장이나 규범적인 문서는 재건과 복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고수한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인재, 훼손, 변형으로 인해 손상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건과 복원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원칙을 세운 문서이다. 국제문화재보존복구센터(ICCROM)가 주도한 지역 컨퍼런스에서 2000년 채택되었다.

핵심내용

- 문화유산의 복제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증거를 잘못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유사하게 지은 새 건물도 환경적인 맥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건축물은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 관련 기념물이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예술적, 상징적 또는 환경적(도시이든 시골이든) 가치가 탁월할 때 자연재해 또는 인재로 손상된 문화유산의 재건은 허용될 수 있으나 다음의 조건을 준용해야 한다.
 - 적절한 조사 및 사료가 있을 것(상징물, 문서와 물질 증거 포함).
 - 재건으로 전반적인 도시 또는 경관 맥락이 훼손되지 않을 것.
 - 현존하는 중요한 역사적 물질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
- 또한 국가 및 지역 당국 그리고 관련 공동체와의 공개적인 협의를 충분히 거친 이후에 재건 필요성이 수립되어야 한다.

□ 유적 보존 국제 규범 문서의 특징³⁵⁾

(1) 유적 관리 정책과 주체

- ① 고고 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책은 문화, 환경, 교육 정책 뿐만 아니라 토지의 사용, 개발, 이용 계획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고고 유산의 보호는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의 상위 계획 정책에 통합되어야 한다.
- ② 완충 구역은 세계유산 보호에 필수적이지만 완충 구역만으로는 증가하는 개발압력에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므로 지역사회와 정부기관을 포함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모니터링의 결과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공유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34) 국립문화재연구소,『세계유산 보존관리 제도와 경주월성』, 2020, PP106-107 직접발췌 및 재인용

35) 국립문화재연구소,『세계유산 보존관리 제도와 경주월성』, 2020, PP115-117 직접발췌 및 재인용

③ 책임질 수 있는 중앙기관의 발굴조사 수행과 전체 유구·유물에 대한 보존과 유지 등을 발굴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는 접근과 고고학적 연구에 대한 기록 유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따를 필요가 있다.

(2) 유적과 주변 환경

① 고고학적 유적의 경우에도 유산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환경이 관리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향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3) 유적의 복원에 대한 전제

① 복원은 실험적 연구와 해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더 잘 알려지거나 시각적으로 매혹적인 기념 건조물에만 해당되어서는 안 되고 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 시도될 수 있다.

② 고고학적 유구 복원의 순기능을 인정함으로서 복원의 여지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술적, 해설적 목적으로 추정에 의한 복원을 배제한다는 베니스 현장의 원칙은 여전히 준용되고 있으며 복원으로 인해 유구가 교란되거나 유적 바로 위에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③ 재료와 물질에 대한 진정성 유지가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대변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급적 새로운 재료의 개입은 자양하는 것이 좋으며 추정에 의한 복원이나 추측에 의한 재건 작업은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

(4) 유적의 진정성 확보

① 세계유산적 관점에서 진정성은 유형적인 유산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항목이 아니라 해당 유산에 부여된 특정한 가치(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진정성, 완전성)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항목이다.

② 그러므로 진정성을 판단하는 항목인 재료와 물질에서 벗어나 확장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유산의 복원을 허용해주는 근거로 작용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이 지상 구조물이 남지 않은 고고학적 유적의 경우 유산의 진정성을 표현해주는 중요 요소로 유산의 위치, 주변 환경이나 유구에서 찾을 수 있는 전통과 기술, 정신과 느낌 등이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증진할 수 있는 보존관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5) 유적의 무형적 요소 부각

① 우리는 유형적인 장소나 건물, 기념물에 특정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때 유형적 요소에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가 곧 유산을 구성하는 무형적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② 따라서 유산의 유형적인 복원을 통해서 어떤 무형적 요소를 보호하고 표현하고자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 ③ 고고 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을 중요시하여 유적의 교육적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3. 복원고증연구 사례검토

1) 국외 복원 관련 규정 및 사례³⁶⁾

가. 일본의 복원관련 법적 기준

일본 문화청은 1991년 전통건축물의 복원에 대한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심의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사적 등에 있어서 역사적 건조물 등의 복원 처리 기준(史跡等における歴史的建造物等の復元の取扱い基準)」이 그것이다. 이 기준에서 복원은 ‘유구에서 존재가 입증되지만, 현존하지 않는 것을 당시의 규모·구조·형식으로, 원위치에 재현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초석만 남아있는 건물지에서, 건물지 흔적만 남아있는 유적지에서도 목조건물을 세우는 것, 그것을 복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심의지침은 기본사항과 기술적 사항으로 나뉜다. 기본사항은 ① 사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유적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 ③ 사적 등의 활용에 있어서 적합할 것, ④ 사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⑤ 사적 등의 전체적인 역사적 풍치 및 경관과 어울릴 것, ⑥ 전체적인 보존 및 정비방향과 조화를 이룰 것, ⑦ 복원건물의 보존 및 관리방침이 확립되어 있을 것 등이다.

기본적으로 복원에 대해 매우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복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정해두고 있다. 그것은 ① 복원의 근거자료가 해당 사적의 역사적 의의와의 관계가 약한 것, ② 유구 보존상황이 극히 양호한데 그 유구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사적의 이해·활용에 있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당 건조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과정에서 각각 다른 역사적인 의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복원의 근거자료는 유구, 문헌, 유물, 회화, 기타 관련 자료가 있겠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거자료에 대한 평가는 복원계획이나 복원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전문가그룹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리고 심의지침의 기술적 사항은 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② 복원 설계가 동시대의 유구 및 유물에 근거하여 개연성이 높을 것, ③ 복원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은 원칙적으로 동시대의 것을 따르고, 그와 동시에 그 지방의 특성을 반영할 것 등이다.

³⁶⁾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시, 황룡사연구총서9, 『황룡사지 유구보존을 위한 정비방안 연구』, 2011, pp. 32~34, 부여군, 『부여 왕흥사지 복원고증 기초연구』, 2019, PP132-142 직접발췌 및 재인용

1970년대 야쿠시지(藥師寺) 금당 복원은 기단과 초석 등 유구를 토대로 하고 관련 사료에서 기둥높이와 2층 구조에 대한 중요한 기록들을 찾아 설계에 반영하였다. 서탑의 복원은 복원의 모본이 되는 동탑에 대한 정밀실측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라(奈良)시대 목탑으로 복원하고자 새로운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정밀실측조사에서 메이지시대 동탑을 수리하면서 변경된 부분을 밝혀내고 첨가된 부분은 제외시켰다.

2010년에 완공된 헤이죠우쿄우(平城宮)의 대극전의 복원은 초석 하나 남아있지 않은 유적이었던 것을, 과거에 이축되었다고 하는 사료를 바탕으로 쿠니노미야(恭仁宮)의 기단과 초석 등 평면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초석 상부는 헤이안(平安)시대의 대극전을 묘사한 회화자료와 문헌자료, 현존하는 고대건축의 자료,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참고로 했다. 이러한 복원과정이 앞서 설명한 복원의 근거와 심의지침을 마련하는 데에 영향을 주고 또한 그 법적 기준으로 정당성을 보장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기술적 근거는 복원하려고 하는 건물이나 동시기 · 동종 건물의 구체적인 조사 자료가 1차적인 것이며 구체적인 규모 · 구조 · 형식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또는 이러한 건물들의 회화 · 사진 · 모형 · 기록 등의 사료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위에서 「개연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러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아마 그러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침으로써 건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용 범위를 훨씬 넓혔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기준에서 복원건물은 수많은 복원안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복수(複數)의 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복원연구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다양한 복원안이 갖고 있는 개연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현존하지 않는 건물의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원한 건물 안에 복원사업의 내용을 전시해두는 공간을 마련해 두어서 사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전시내용은 최종 복원안과 다른 복원안의 내용, 복수의 안에서 복원안을 취사선택할 때 검토한 내용, 최종 복원안의 공사 내용 등이다. 당대에는 복원안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 일본의 고대건축 복원 대표사례

(1) 헤이죠우쿄우(平城宮) 복원

1998년 「고도 나라의 문화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평성궁(平城宮)은 나라시대(710~794)에 왕궁으로 1978년부터 복원고증연구를 통해 정전인 대극전과 주작문이 복원(2010년)되어 있으며, 현재도 왕궁의 중심시설인 대극전원 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평성궁 유적은 일본 특별사적으로 1969년까지 나라현에서 관리하였으며 유적지 정비는 주로 유구 표시정비 위주였다. 유적지 내 각종 시설건설은 일본 문화청 직영으로 추진되었는데, 해당 사업은 유구전시 보호건

물(覆屋)건설, 자료관·조사연구·수장시설 건설, 구내도로 조성, 수로개수, 조사 연구기지 건설 등이었다.

이후 1970년부터 평성궁의 정비는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 평성궁을 유적박물관으로 정비하여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궁궐유적 전체를 여러 개의 지구로 나누어서 지구마다 발굴조사와 연계된 정비계획을 세웠다. 보호건물 주변 동부지구까지 정비는 기단수복, 잔디식재, 수목, 원로조성 등을 행하고 동시에 미발굴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울타리, 배수시설, 초원조성 등 정비를 행하였다. 또한 수상연못, 어전연못은 궁궐유적지 유지관리 및 목간 등 목질 매장물 보존을 위한 수원으로서 이용하도록 하였다.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리 및 지하유구와의 관련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였고, 담장, 정원 등 어느 정도 복원을 행하였다. 유적지와 관계가 깊은 구 주작대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보존정비를 행하였으며 유적지 내부를 통과하는 도로는 향후 순회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일본 평성궁 유적 정비는 1978년에 일본 문화청에 의해 공표된 ‘평성궁 유적 복원정비 기본 구상(유적박물관구상)’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기본구상에서 평성궁 유적에서는 4가지 존(zone)을 건물복원지구로 설정하였다. 궁내성 지구, 주작문 지구, 동원정원 지구, 제1차 대극전원 지구 등이다. 건물 복원정비사업은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엄정한 복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현재 평성궁터에서는 제1차 대극전, 주작문, 동원정원은 건물과 정원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앞으로 한층 더 활용되기 위해 국영 평성궁적 역사공원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2) 평성궁 대극전 복원(1993~2010)

대극전의 복원공사는 먼저 1995~2000년에 걸쳐 문화재건조물보존기술협회 설계가 진행 되었고, 그 후 2001~2010년에 걸쳐 다케나가(竹中)공무점이 주축이 되어 시행되었다.

유구를 보호하기 위해 발굴유구면 위에 약 80cm 두께(성토보호층 250mm, 개량지반 500mm 두께)로 양생층을 조성하고 지반개량범위를 지붕처마의 범위로 한정하여 복원지반면으로 정하였다. 즉 기단부는 발굴유구면상에 250mm 두께의 성토보호층, 그 위에 300mm 두께의 개량지반을 조성하고 50mm 두께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철근콘크리트 구체(내압반 600mm 두께)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기단의 높이는 80cm 상승하였다. 개량지반과 내압판을 통해 상부하중을 등 분포적으로 지반면에 전달해서 유구를 보호하고 구체 자체는 기단의 외장으로 지지체로 하였다. 또한 기단 구체 상면에 방수막 처리를 하였으며 기초부에 면진장치를 설치하였다. 대극전 복원에는 건축기준법과 소방법이 적용되었다.

(3) 평성궁 동원 우루 복원공사(1993~2010)

동원 우루 복원 공사에서는 유구 보호층 시공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건물을 세우기 전에

기초지반 성능평가를 위하여 성토층위에서 평판재하 시험을 한 결과, 발굴 후에 묻어 덮어 두었던 성토층이 유구보호용 토목 시트와의 사이에 물을 함유하게 되어서 소정의 지내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지반개량을 행하고 소정의 지내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었다.

동원 우루의 복원공사는 1999~2000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실시설계는 문화재건조물보존 기술협회가 담당하였고 오바야시(大林)가 시공을 담당하였다. 동원 우루의 기초지반 조사 후 유구면에는 투수성 토목시트를 깔고 지반개량공사는 시멘트계 고화제를 혼합한 개량토로 성토한 후 기계다짐을 통해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기초는 콘크리트 매트공법으로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두께를 줄였고 철근과 앵커볼트를 설치하였다. 동원 우루 복원에는 건축기준법과 소방법이 적용되었다.

(4) 평성궁 주작문 복원공사(1993~1998)

평성궁 주작문의 복원공사는 1990~1998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실시설계는 문화재건조물 보존기술협회가 담당하였고 시공은 다케나카(竹中) 공무점이 실시하였다. 이 시기는 1995년 일본이 세계유산조약 가맹국으로 인정된 후 고도(古都) 나라의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1998년 전에 시작된 복원이다.

유구에 관해서는 먼저 유구보존을 위해 발굴 유구면 위에 약 70cm 두께의 판축공법에 의한 양생층을 조성하고 그 위에 철골철근콘크리트 이중슬래브방식으로 상자형태의 기초를 설치하여 상부하중을 지반면에 골고루 전달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당초의 판축유구 상면에 평판재하시험을 2개소 실시하였으며 또한 인근에서 선행 조사한 보링조사(50m) 결과를 참조하였다. 내진구조를 위해 내진벽의 수평재하 실험과 수평내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작문 복원에는 건축기준법과 소방법이 적용되었다.

다. 중국의 복원관련 법적 기준

□ 중국문화재보호법(개정 2015)³⁷⁾

Principles for the Conservation of Heritage Sites in China(Revised 2015)

해당 지침은 2000년에 중국문화재보호법(개정 2015)을 제정하여 중국내 문물보호분야에서 최고의 원칙과 기준으로 실행되어 왔으나 급격한 경제와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늘어나는 문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5년에 개정한 지침이다. 중국 내에서는 중국문화재보호법(개정 2015)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중국내 세계유산 뿐만 아니라 문화 경관, 경로 유산(heritage route), 20세기 산업 유산과 무형 유산을 포함하는 보존지침이다. 지침에는 문물보호를 위하여 유형의 유산만이

³⁷⁾ 국립문화재연구소,『세계유산 보존관리 제도와 경주월성』, 2020, PP112-113 직접발췌 및 재인용

아닌 무형의 유산에 대한 명확한 가치 인식, 문물보호의 기본 원칙,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학제 간 연구, 전시 및 교육을 통한 문물 활용에 대해 중국 내에서 문물 보호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지침이다.

핵심내용

- 원칙의 목적은 유적지의 보존에 가장 좋은 실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존은 유적지, 그 환경과 관련된 요소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보존의 목표는 기술과 관리 방안을 사용하여 유적지, 역사적인 정보와 가치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 연구는 보존의 모든 측면에서 기본이다. 보존 절차의 각 단계는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다. 연구 결과는 유적지의 보존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활성화 하고 그 가치의 진가를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돋기 위해 효과적인 광고 혹은 출판을 통해 대중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 유적지에 대한 개입은 그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 적합한 보존 기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과학적으로 확인된 보존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존 기술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보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보존 기술과 역사적인 재료의 증거는 보존되어야 한다.
- 공식적으로 보호되는 유적지는 경계를 구분하고, 공식 보호 단체는 유적지의 상태를 선언하는 명판을 세우고 공문서와 기록을 유지하며 보완하고, 전담 기관을 세우거나 유적지 관리자로 임명된 사람을 확인해야 한다. 완충 지역은 개발과 생산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유적지 경계 주변에 지정해야 한다.
- 보존 방안은 유적지와 그 환경의 보호, 안정화 혹은 보존에 대한 기술적인 개입과 처리를 말한다. 이것은 정기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강화와 안정 방안, 환경의 수리, 보호 구조, 재배치와 관리를 포함한다. 기술적 개입은 실행 전에 프로젝트 설계와 연관된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모든 기술과 관리 개입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기록보관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 문화유산의 가치는 진정성이고, 통합적이며 정확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유적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은 피해야 한다. 전시와 해석은 다양한 청중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현존하지 않는 건물을 원위치에 재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며 유적보호가 우선이라는 중국문화국의 일관된 방침이 제시되었다. 단, 매우 특수하고 개별적인 상황하에서 재건을 인가하고 있다. 이 때 현존 유적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재건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원래의 형식이나 구조와 다른 주관적인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

즉 재건은 원위치에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때 유적을 적절히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적의 원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건하는 건축물에는 눈에 띠는 표지를 붙여 설명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목조문화재 수리 및 재건에 관해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재건불가라는 기본방침을 강조하는 앞서 소개한 「중국문화재보호준칙」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많은 복원프로젝트에 지지를 보내는 「취푸선언(曲阜宣言)」(2005)으로, 중국건축사학계에서 저명한 루워저원(羅哲文) 등 학자들의 입장을 공표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복원에 대한 직접적 증거와 법적인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전자는 복원이 아주 예외적인 조치라고 하고, 후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복원은 여전히 과학적·예술적·역사적 가치를 갖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옛 것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즉 원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수복한 고건축을 가짜 골동품으로 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재건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률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실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선언문에서 주목할 사항은 전통재료와 전통기술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고건축 수리에 있어서 신기술, 신재료의 응용과 대체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가역성(可逆性)을 구비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제거하면 문화재의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재배양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위 보장 등 안정된 전문가팀을 유지하는 것이 문화재 보호의 관건이라고 한다.

2002년에 준공된 중국 항저우의 레이펑타(雷峰塔)는 이러한 유적의 가역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외형복원사례이다. 원래 유적 위에 철골구조물로 세우면서 탑의 외형은 역사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고 탑신에는 현대화된 자재 및 기술을 이용하여 가식적이고 모호한 이미지로 인해 역사적 진실성이 흐려지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유적으로서의 놀봉탑은 이미 붕괴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조성하는 탑은 유적의 건축물이 아니라 관광사업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관 복원용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적보호조치라는 차원에서 보면, 국제사회에서 유적보호를 위한 조치의 경우 가역성과 차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재로 철골과 유리를 선정하게 되었다. 모든 부재는 현장에서 조립·설치하였기 때문에 언제든 해체하여 복구할 수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 복원재건의 길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고 조건부로 일부 고건축의 복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고건축 보호에 대한 전통적 습관과 객관적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및 ‘특별한 승인’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이다.

복원재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점은 학술적 요소나 기술적 요소가 아니라, 지방정부나 지방 공무원의 관여인 것이다. 그들이 종종 지방의 경제나 관광발전에 대한 욕구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때때로 근거도 없이 수준 낮은 복원건축 프로젝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목조 고건축의 복원재건을 의미 있는 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 차원에서 명확하고 엄격한 조정을 함으로써 근거없이 가짜 건물을 만드는 행위가 과학적으로 엄밀한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국내 고증복원 연구 사례

가. 황룡사 복원 고증연구³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장기 연구과제로 2024년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계획되어 있고, 2035년까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타 문화 유산 복원 고증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는 선구적 연구라 할 수 있다.

『황룡사 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 연구는 인문학적 기반연구, 정비방안 기초연구, 복원고증 기초연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황룡사 복원 기초연구(2007~2011)은 정비방안과 복원고증을 나누어 연구하는 큰 틀을 완성한 연구로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복원고증 기초연구가 사업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는 작업이라면, 정비방안 기초연구는 설정된 목적에 따라 사업의 방법을 구상하고, 실제 유적에서 시행 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황룡사 복원 기초연구에서 다져진 정비연구와 고증연구라는 연구범주는 향후 이어진 심화연구에서도 이어졌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립한 『황룡사복원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이후 5개년 동안의 목표를 황룡사 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기초연구 5개년 동안 『황룡사복원종합계획』이 그 결과물로 제안되었고, 종합계획에 따라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은 심화연구(2012년 7월 ~ 현재)로 이어지게 되었다.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는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9년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기초연구와 같이 크게 고증연구와 정비연구로 나뉘어 수행되었고, 2013년에는 담장이, 2015년에는 중문

³⁸⁾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백제왕도핵심유적정책연구포럼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진단과 방향제시』, 2021. PP1-13 『황룡사복원정비 고증연구의 과정과 과제』 직접발췌 및 재인용

이 기본설계 대상이 되어 고증·정비연구와 별도로 복원설계가 진행되었다. 심화연구라는 연구 제목답게 각 연구는 총 43개 주제로 세분화되어 진행되어, 기초연구와는 확실한 차별성을 지닌다.³⁹⁾

고증연구의 결과를 정비계획과 복원설계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나갔다는 점 역시 기초연구와 큰 차별점이다. 비록 예기치 못한 사업환경의 변화로 담장과 중문만이 복원설계의 대상이 되었으나, 고증연구를 토대로 제안된 복원안이 설계도로 구체화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황룡사 복원정비사업의 큰 진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문 복원설계는 첫 황룡사 건축물 설계였으며, 단층안과 중층안으로 나누어 제안되었다. 이렇게 안을 나누어 제안하게 된 데는 앞서 밝힌 복원정비사업이 가지는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복원정비연구는 학설과 이론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작업이다. 때문에, 한 가지 제안만으로는 서로 상충하는 이론이나 의견을 모두 담아내기 힘들다. 따라서, 현재 황룡사 건축 고증연구는 하나의 안이 아니라 가능한 다수의 안을 검토하여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 심화연구가 갖는 차별점은 제목 그대로 성과가 심화 되었다는 점이다. 복원고증연구, 정비계획연구, 복원설계 모두 각각 연구 과정이 고도화되었는데, 먼저 복원고증연구는 보완 발굴을 시행하여 연구 내용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연구는 그 결과가 실제 기단정비로 이어져,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다. 나아가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현장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등의 학술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원설계는 디지털 복원으로 이어져, 관람자가 황룡사 중문을 유적에서 직접 증강하여 체험할 수 있는 앱(application)이 개발되었다.

한편, 중문 복원설계와 디지털 복원은 황룡사 복원이라는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에 유일하게 부합하는 가시적인 성과이다. 현재 황룡사복원정비사업단은 2024년까지 황룡사 중금당 디지털 복원 성과를 운용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고증연구 이후 중문 기본설계안이 나오기까지 5년이 소요되었고, 다시 디지털 복원에 2년 남짓이 소요되었으므로 2024년까지 중금당을 디지털 복원하는 계획은 결코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초연구에서 심화연구로 이어진 황룡사복원정비사업의 연구는 고증연구와 정비연구로 크게 구분되며, 기초연구 단계에서는 인문학기반연구가 심화연구 단계에서는 복원설계가 함께 진행되었다.

39) 한편, 고대 황룡사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을 다루는 연구가 심화연구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한계로 지적하기에 앞서, 심화연구가 기획되고 시작된 시점은 현재와 달리 학제간 연구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고, 연구를 추진한 황룡사복원정비사업단 역시 역사문화환경전반을 다루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던 당시 사업환경도 고려해야만 한다.

나. 미륵사지 복원 고증연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백제 사찰인 미륵사지에 대한 고증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8년 미륵사 복원사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바람직한 복원 연구의 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시작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서 시작되어 2010년까지 추진된 주요 연구는 복원고증 연구계획 로드맵 작성을 중심으로 고증 기초조사 및 미륵사지 관련 인문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복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2013~2014년 미륵사 복원정비 기초연구 및 관람환경 개선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유구별 정비방향 및 범위설정, 건물지 구성부재 및 기단유형조사, 가람배치 및 사역경계 요소 연구 등('14~'15) 2차 복원정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구별 보존방안 연구, 건물 고증 기본연구 ('15~'17), 회랑·중문 등 주요건물 고증 기본연구, 목탑지 물리탐사 및 기단 정비 사업 지원 연구('17~'18), 중문·목탑·금당·강당지 고증 기본연구 및 건물지 기단부 지원 연구 사업 ('18~'21)을 진행 중에 있다.

다. 경주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사업 추진 현황⁴⁰⁾

경주시에서는 사적 제18호 '동궁과 월지'의 복원을 2010년부터 추진한 바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서편지·남편지 주요건물(추정 정전·편전·침전·중문·회랑) 복원 및 경역에 대한 조경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주요 추진사항은 2012년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후 2015년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를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 건물복원 실시설계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 당시 조건은 실시설계시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완 발굴조사 실시 후 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후 2018년 서편지 건물 복원 실시설계에 대해서도 세계유산센터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바 있다.

경주시에서는 '동궁과 월지'의 복원 정비를 위해 세계유산센터에 정비(안)을 협의하였다. 경주시의 1차 제출(안)은 유적 복토 후 50cm의 강화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유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복원하는 의견에 대해 이코모스에서는 '원 유적의 기단부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장비의 하중을 비롯해 특히 해당 장비에서 발생할 진동 때문임'을 강조하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주시가 제출한 설명자료에는 '적절한 보존조치가 취해져 원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들 유물의 위치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다며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86조⁴¹⁾가 기

40)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백제왕도핵심유적정책연구포럼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진단과 방향제시』, 2021. PP1-13 『황룡사복원정비 고증연구의 과정과 과제』 직접발췌 및 재인용

술하는 바와 같이 ‘진정성과 관련해 고고학적 유구나 역사적 건물 또는 지구의 복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으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된다.’며 당사국은 양식적 복원이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감상의 수준을 높이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회문화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현 사업이 ‘예외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시한 복원계획이 현재 사실적이며 고고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유적의 성격과 OUV에 대한 해당 유적이 기여하는 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근거에 해당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경주시에서는 기존 50cm 강화콘크리트 매트 기초공법 대신에 1m 이상 띠워 최신 공법을 적용하고 보호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로 계획을 변경하여 이코모스의 의견을 구하였다. 이코모스는 이에 대해서도 상기 운영지침의 같은 조항을 근거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맷음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이며 수리와 복원 등에 관련하여서도 유산이 가진 가치와 진정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이 마련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은 ‘베니스현장’과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등 국제현장의 원칙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한 기준이다.

이 지침에 따라 복원은 고증에 의하여 충분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복원은 남아있는 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법위에서 가능함을 복원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복원은 고증에 의해 충분한 ‘증거’를 입증할 수 있을 때 가능함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국제규범을 통해서도 추정에 의한 복원이나 추측에 의한 재건을 지양하고 진정성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베니스현장’이나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가치에 의한 본질적인 평가요소’로 규정한 ‘나라문서’ 등을 종합해 보면 국제 규범의 공통점은 유적복원에 대해서는 복원으로 인해 유구가 교란되거나 유적 바로 위에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경주 동궁과 월지의 복원(안)에 대한 이코모스의 의견 또한 이와 유사한 입장임을 알 수 있다.

41) In relation to authenticity, the reconstruction of archaeological remains or historic buildings or districts is justifiable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Reconstruction is acceptable only on the basis of complete and detailed documentation and to no extent on conjecture.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대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우리 추진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복원 고증연구 사업 대상인 백제시대 건축물의 상부구조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함에도 그 동안의 고증연구의 목표점은 고대 건축물의 현지 복원으로 귀결되어 왔다.

복원고증 연구는 유적 정비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요소이다. 그럼에도 고대 유적처럼 상부구조가 훼손되어 직접적 증거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그 동안의 조사결과 및 각종 사료, 일본, 중국 등 유사한 시기의 주변 국가 유적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을 통해 고증안을 도출해 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고증안은 주어진 현실에서는 최선의 안 일수는 있으나 진정성을 가진 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그러하기에 유적지 내에 실물복원을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법령 및 우리가 맺고 있는 국제협약 및 국제적 문화유산의 보호 기준과 관련하여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이 유적의 복원이라는 목표점이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목표점이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앞서 살펴보았던 신라 왕경 유적의 복원 검토 과정이나 익산 미륵사지 고증연구의 상부구조 복원 목표는 타당하였는가. 타당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고증연구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의 자리가 이 검토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이에 간략히 필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유적에 대한 복원고증연구 추진을 위해서는 연구 계획 수립 당시 이 연구가 추구하는 목표점과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과업에 이를 반영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계획 수립시 문화재 구역의 적정성, 토지매입 및 토지 소유현황, 발굴조사 현황 등 복원고증 용역의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 복원고증연구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고증연구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지향점이 유적지 내 상부구조를 포함한 완전복원인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인지, 주변에 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과업지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설정된 목표점에 대한 문제점 검토를 통해 어떻게 앞에서 말한 국내법 및 이코모스 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불임 예시표 참고)

마지막으로 복원고증연구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복원고증 연구는 유적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까지만 우선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다. 미륵사지 등 사찰의 예를 든다면 발굴조사 등으로 유적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단부까지에 대해 기존의 발굴조사 결과 분석 및 필요시 추가 발굴조사 등

을 실시하고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진정성 있는 1개의 결과물을 작성, 복원 정비의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유적의 진정성과 직접적 증거를 확인 할 수 없는 고대 건축물의 상부구조에 대해서는 '복원'을 위한 고증연구가 아닌 우선 유적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학술연구'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이에 따른 성과물은 복수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으며 최신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재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제반 환경이 가능하다면 법적 제도적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적지 주변 내 문화유산을 재현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유적의 보호 및 진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복원효과를 거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유적의 복원 및 정비에 있어 오직 유적지 내 복원만이 아닌 유적 및 주변의 현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비 ·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연구를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예시)

복원고증 연구 타당성 및 고증연구의 목표점 설정시 검토사항

<p>1. 고증연구 계획 수립의 타당성</p>
<p>가. 문화재 구역의 적절성</p>
<p>나. 문화재 구역의 토지매입 및 현황</p>
<p>다. 문화재 구역의 발굴조사 현황 및 결과</p>
<p>라. 유적의 성격 규명 및 시기 설정</p>
<p>2. 고증연구의 목표</p>
<p>가. 고증연구의 지향점(목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복원 - 진정성확인까지 복원 - 재현 - 기타
<p>나. 계획이 국내외 문화재 보호 기준 적합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법 및 체결된 국제협약에 저촉되지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촉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p>다. 연구의 지향점 추진시 문제점은 없는가</p>
<p>라. 연구의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점 도달을 위한 연구 체계, 기간 방법 등은 적절한가



법과 사례를 통해 본

고증연구의 방향

백제왕도 특성유적 보존관리 사업추진단

송 길 상

"목차"



1 서 론



2 법령 및 각종 협약

3 복원고증연구 사례검토

4 맷 음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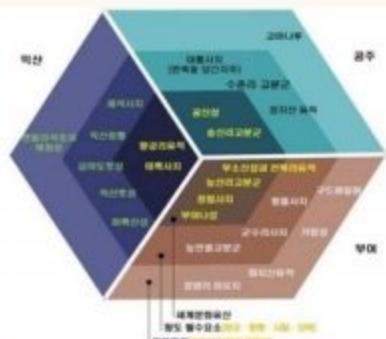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2038(22개년)

총사업비 : 14,027억원

사업대상 : 26개 백제 핵심유적
(세계유산 9, 필수요소 11, 외곽 6)



발굴, 고증여구 및 복원 정비 ►► 역사문화도시 조성

1차포럼

(21, 5, 24)

백제왕도 해설유적
복원고증연구의
진단과 방향제시

- 복원정비에 대한 목표, 가치, 의미에 대한 합의의 선행 필요
 - 복원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 및 복원철학에 대한 논의 필요
 - 복원 고증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분석 판단
 - 디지털 복원 관련 활용방안 마련 및 카테고리 개발 필요



2차포럼

(21. 10. 25)

법과 사례를 통해 본
고증연구의 방향

- 국내 관련 법규사항 분석
- 국제 협약 및 헌장, 문서 등 검토
- 국내외 복원 고증 사례 검토



백제왕도 핵심유적
고증 복원 연구의 방향정립

국내 관련법

- 문화재보호법
- 세계유산법
- 고도보존법

- 백제왕도 핵심유적은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 및 지자체는 종합적 시책을 수립
 - 문화재 및 역사문화 환경의 보호
- 문화재보호법상 보존, 관리, 활용의 기본원칙
원형유지

국내 관련법

- 세계유산법

- 핵심유적 중 9개 유적이 세계유산 등재
- 세계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1. 2 시행, 약칭 세계유산법)
- 세계유산법의 기본 취지
등재 당시의 완전성 및 진정성을 포함하여
유산의 탁월한 가치의 유지 향상

세계유산법

- 세계유산 등재구역에 대해 세계유산 구역 및 완충구역 지정
- 세계유산 구역에 대해 종합 및 시행계획 수립
- 세계유산의 보호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해 보호
-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해 보존상태 정기 조사 점검
세계유산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

문화재보호법

-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시행령 제20조)
 - 정비계획 수립 시 문화재보호법의 원형유지에 중점
 -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해 문화재의 신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정비
→ **무분별한 복원 지양**
 - 정비계획 수립 시의 유의사항
 - 사적의 유형별, 시대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가치를 살려 특성화된 계획수립
 - 역사적 사실과 연구고증을 바탕으로 보수 정비 추진
 -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제반여건을 종합검토 계획의 실효성 확보
 - 정비사업은 현황조사, 사유지매입, 발굴 및 고증, 정비 활용 순으로 추진

문화재보호법

- 관리단체의 정비에 대한 기본방침
 - 기존 사적이 더 이상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정비
 -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적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강
 - 사적의 일부가 손멸실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존과 동일한 재료와 수법, 양식 등을 이용하여 원형에 충실하게 보수 정비
 - 보존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출정비, 복토정비, 보호구조물 설치 등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비
 - 본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지양하고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해 진정성 및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추진



문화재 보수 복원 관련 주요 용어

수리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대로 고치는 행위

보강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건고히 하는 행위

수복 : 문화재의 원형을 부분적으로 잃거나 훼손된 경우 고증을 통해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행위

복원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이건 :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다른 장소에 옮기는 행위

08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 복원에 관한 원칙

▲ 유적의 보존은 원형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원보다는 수복 → 수복보다는 수리

▲ 유적의 수리에 관한 원칙

-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전체와 조화되도록

▲ 복원에 관한 원칙

- 고증에 의해 충분하고 직접적인 증거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 가능

- 복원은 지상 또는 지하에 남아 있는 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유적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복원 제한

'복원'의 개념

- 문화재보호법상의 복원

- 문화유산 중 그 결실부분을 재건하는 행위(Reconstruction)
- 유구난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존하지 않는 선물을 유적지위에 복원하는 행위(Restoration)를 모두 포함
- 법, 지침 등에는 사적지 내 유구의 원형보존과 관리를 위한 사항 규정, 현존하지 않는 상부구조의 복원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음.

▲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복원고증연구에서 유적지내 복원은
재건의 개념이 강한 'Reconstruction' 보다는 'Restoration'의 개념

증거(Evidence)

- 복원은 고증에 의해 충분한 '증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 복원고증연구의 목적은 연구를 통한 향후 정비 계획의 수립
- 그 동안의 연구는 훼손되어 사라진 지상구조물의 현지 복원을 전제로 진행
- 연구의 성과는 복원 과정에서 유적의 '원형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복원의 방법이 유적의 '진정성'에 기반할 수 있는가로 귀결
- 고증을 위한 직접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작성된 복원(안)이 가지는 '진정성'의 한계

∴ 복원고증 연구시 원형유지, 진정성, 직접적 증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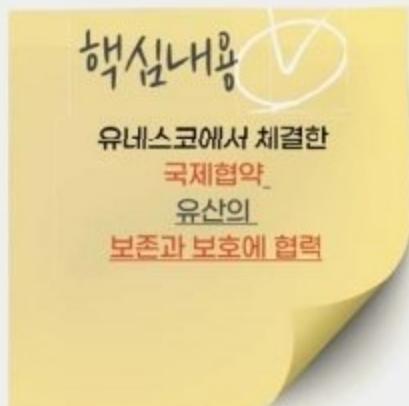
문화유산 보호의 국내외 기본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검토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 세계유산협약(1972)

- 운영기구: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 유네스코에서 체결한 국제협약
- 전 세계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가진 유산을 등재하여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보호
- 우리나라는 1988년 가입, 15건의 유산이 등재
- 유산의 등재는 OUV를 인정받는다는 의미
- 유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 학술적, 행정정 기반 마련
- 제도 및 체계 개선을 통해 유산의 가치보존을 위해 노력
- 체결 당사국은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최우선의 노력과 유산의 보호에 협력



유산영향평가

- 유산지역 내 새로운 사업 시행 전 사업시행이 유산에 미칠 영향 측정

- 세계유산위원회는 OUV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복원, 신규건설사업의 시행 또는 허가 전 그 의도를 사무국에 알리도록 함.
- **유산평가의 본질 :** 위험에 처한 유산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변화 또는 개발(안)이 OUV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영향은 어떻게 회피, 축소, 회복, 보살 될 수 있는가.

평가 주요절차



기념물과 유적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국제 현장

□ 비니스 현장(1964)

- 건축, 유적 보존관리 규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문서로 가장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원칙.
- 추경에 의한 복원이나 추축에 의한 재건작업은 지양
- 해당 건조물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 하되 의미의 왜곡없이 이를 드러내야 함.
- 발굴 유적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추축에 의한 재건 작업은 모두 배제되고 발견된 기존 부재의 재조립만이 허용됨
- 진정성 유지가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대변
- 추축이 시작되는 순간 복원은 중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추가 작업은 건축적 구성에서 반드시 구분

핵심내용

추축이
시작되는 순간
복원은
중지되어야 한다.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1994)

국제 규범 문서 중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내용 반영

- 문화유산의 보존은 유산에 부여된 가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가치를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은 가치에 관한 정보의 출처 신뢰성, 진실성의 이해 정도에 달려있음.
- 진정성의 이해는 문화유산의 과학적 연구, 보존과 복원 계획에 있어 근본적 역할을 함.
- 문화적 자산에 부여된 가치 판단은 같은 문화속에서도 다를수 있으며,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요구함.
- 고정된 기준으로 가치와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 진정성 판단은 정보 출처의 다양성 정도에 달려있으며 형태, 디자인, 재료, 물질, 전통과 기술, 주변환경, 정신과 느낌, 기타 내외적 요소를 포함.

핵심내용

유산의 진정성은 물리적
재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 기능, 용도, 전통기법
등의 유지 여부에서 판단



문화유산과 관련된 진정성에 관한 리가현장(2000)

국제문화재보존복구센터(ICCROM) 주도

- 기념물의 가치가 탁월할 때 자연재해 또는 인재로 손상된 문화유산의 재건 허용
- 허용조건
 - 척도한 조사 및 사료가 있을 것(상징물, 문서, 물질증거)
 - 사건으로 전반적인 도시, 경관이 훼손되지 않을 것
 - 현존하는 중요한 역사적 물질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

핵심내용

자연재해, 인재, 훼손, 변형
으로 인해 손상된 경우
예외적 재건과 복원 허용
"Reconstruction"

유적 보존 국제 규범 문서의 특징

유적의 복원에 대한 전제

1. 복원은 더 잘 알려지거나 시각적으로 매혹적인 기념 건조물에만 해당되어서는 안되고
 - 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보여 줄 수 있는 곳에서 시도될 수 있다.

1. 고고학적 유구 복원의 순기능을 인정함으로써 복원의 여지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니
 - 학술적, 해설적 목적으로 추정에 의한 복원을 배제하는 베니스 현장의 원칙은 여전히 준용
 - 복원으로 인해 유구가 교란되거나 유적 바로 위에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재료와 물질에 대한 진정성 유지가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대변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 가급적 새로운 재료의 개입은 자양하는 것이 좋으며
 - 추정에 의한 복원이나 추측에 의한 재건 작업은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

유적 보존 국제 규범 문서의 특징

유적의 진정성 확보

1.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진정성은 유형적인 유산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항목이 아니라
 - 해당 유산에 부여된 특정한 가치(OUV, 진정성, 완전성)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

1. 진정성을 판단하는 항목이 재료와 물질에서 벗어나 확장되었다 해서
 - 유산의 복원을 허용해 주는 근거로 작용할수 없으며

1.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이 진정성 표현의 중요 요소로 유산의 위치,
주변 환경이나 유구에서 찾을 수 있는 전통과 기술, 정신과 느낌 등이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증진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일본의 복원관련 기준

- '사적 등에 있어서 역사적 건조물 등의 복원 처리 기준'(문화청, 1991)
전통건축물의 복원에 대한 허용여부 판단 심의기준 마련
- 복원은 '유구에서 존재가 입증되지만 현존하지 않는 것을 당시의 규모, 구조, 형식으로 원위치에 재현하고자 하는 행위'
- **기본사항:** 사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유적을 손상 시키지 않을 것, 사적 등의 활용에 있어서 적합할 것, 사적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전체적인 역사적 풍치 및 경관에 어울릴 것, 보존 정비 방향과 조화를 이룰 것, 복원 건물의 관리방침이 수립되어 있을 것

일본의 복원관련 기준

- 복원의 근거 자료: 유구, 문헌, 유물, 회화, 기타 관련자료
- 심의 지침의 기술적 사항: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복원 설계가 동시대의 유구 및 유물에 근거하여 개연성이 높을 것, 복원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은 원칙적으로 동시대의 것에 따르고 동시에 지방의 특성을 반영할 것
- 복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복원의 근거 자료가 해당 사저이 여시적 의의와의 관계가 약한 것, 유구 보존상황이 극히 양호한데 그 유구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사적의 이해 활용에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조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과정에서 각각 다른 역사적인 의의가 인정되는 경우.
- 주요 복원 사례: 평성궁 복원

중국의 복원관련 기준

- '중국문화재 보호규칙(2000 제정, 2015 개정)

중국 내 유형 및 무형적 유산의 보호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적용

- 핵심내용

- 원칙의 목적은 유적지의 보존에 가장 좋은 실행을 보장하는 것
- 보존의 목표는 기술과 관리방안을 사용, 유적지 및 역사적인 정보와 가치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
- 유적지에 대한 개입은 그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
- 적합한 보존 기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확인된 보존을 사용
- 보존 기술은 장기간 보존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보존기술과 재료의 증거는 보존

중국의 복원관련 기준

- 핵심내용

- 완충지역은 개발과 생산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유적지 경계주변에 지정
- 문화유산의 가치는 진정성이고 통합적이며 정확한 방법으로 제시 해석되어야 하며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에 기반
- 유적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은 피해야 함
 - 현존하지 않는 건물을 원위치에 재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
 - 재건을 인가하는 특수한 경우에도 현존 유적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재건에는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하며 원래 형식 및 구조와 다른 주관적 설계지양
- 축포선언(2005) : 과학적 방법에 의한 복원은 과학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갖는 문화재로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정당

국내복원고증 연구

- 경주 황룡사 복원고증 연구

우리나라 복원고증의 선구적 연구, 타 유산 고증연구 방법의 기준 제시

- '07~'11 황룡사 복원 기초연구 : 정비방안, 고증연구로 나누어 진행
- '12~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 : 정비계획, 복원설계(담장, 중문)
 - * 심화연구는 총 43개 주제로 세분화 기초연구와 차별성
 - * 중문 : 첫 황룡사 건축물 설계 복수안(단층, 중층) 제시
- 디지털 복원은 황룡사 복원 정비사업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가시적 성과

국내복원고증 연구

- 익산 미륵사 복원고증

- '08~'10 : 복원고증 연구계획 로드맵 작성, 고증 기초조사 및 미륵사지 관련 인문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 '13~'15 : 미륵사 복원정비 기초연구 및 유구별 보존방안 연구
- '15~'17 : 유구별 보존방안 연구 및 건물 고증 기본연구
- '17~ : 중문, 목탑, 금당, 강당지 고증 기본연구 및 건물지 기단부 연구

유적 복원추진

- 경주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사업 추진현황

주요 사업내용: 서편지 및 남편지 주요 건물 복원(추정 정전, 편전, 침전, 중문, 회랑)

- 주요 추진사항

- * 2012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 * 2015년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문화재청 승인
- * 2017년 남편지 건물복원 실시설계 문화재청 조건부 승인
- 승인 조건: 실시설계 세계유산센터와 협의, 발굴조사 결과 설계 반영
- * 2018년 서편지 건물 복원 실시설계 문화재청 조건부 승인(조건 동일)

동궁과 월지

- 경주시 - 세계유산센터 복원 설계 협의

- 경주시 협의(안): 유적 위에 50cm 강화콘크리트 마트 기초 후 복원
- 세계유산센터(이코모스) 협의 의견
 - * 원 유적의 기단부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장비의 하중을 비롯 부정적 의견 제시
 - *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86조 '진정성과 관련해 고고학적 유구나 역사적 건물 또는 지구의 복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
 -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으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된다.
- '예외적 상황'인지에 대해 근거 부족, 제시 복원계획이 해당 유적의 OUV에 영향

맺음말

- 문화재보호법 : 원형유지의 원칙
-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 * 복원은 고증에 의하여 충분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 남아 있는 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 베니스 현장 : 추정에 의한 복원이나 추측에 의한 재건 지양
- 세계유산협약 및 나라문서 : 진정성
- 복원으로 인해 유구가 교란되거나 유적 바로 위에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그 동안 복원고증연구의 목표점의 도달 가능성 검토

맺음말

- 복원고증연구 계획 수립시 사전 타당성 검토
 - * 계획 수립시 구역의 적정성, 토지매입 및 소유현황, 발굴조사 현황 사전검토
- 타당성 검토 후 목표점 및 지향점 명확히 설정
 - * 전면복원 여부 등 복원고증 연구의 지향(목표)점 구체화, 설정된 계획의 국내외 문화재 보호 기준 적합여부 및 해결방안, 목표점 도달을 위한 연구 체계 및 기간 방법 등
- 복원고증연구의 목표 : 유적의 진정성과 직접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곳까지 진행.

감사합니다

부록

1.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3.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 ·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4.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5. 기념물과 유적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국제 협약 (베니스 협약, 1964)
6.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1994)
7. 기념물, 건물군과 유적 기록에 관한 원칙(1996)
8.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진정성과 역사적 재건에 관한 리가 협약(2000)
9.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협약
- 건축 유산의 분석, 보존과 구조적 복원에 대한 원칙(2003)



부록 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계유산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7587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재청(세계유산팀) 042-481-3181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등재 당시의 완전성 및 진정성의 요건을 포함하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지되거나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며, 지역 주민의 역할을 중대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보존·관리·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

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 ① 국가는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8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남북한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외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내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세계유산의 유지·관리 및 지원과 제1항에 따른 등재 신청 대상의 선정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 ① 문화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세계유산 구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2. 세계유산 완충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
- ③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세계유산지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한 후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 ① 문화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1. 세계유산 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3조(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제25조, 제26조, 제70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 세계유산 완충구역: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3. 세계유산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4.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5. 세계유산의 기록정보화
 6.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에 대하여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문화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 ⑤ 시행계획은 세계유산 등재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⑥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3.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
 4.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활성화 방안
 5.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공동체 활동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6. 해당 세계유산 관련 교육 및 홍보 활성화
 7. 해당 세계유산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 증진
 8.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9. 그 밖에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및 주민 지원
-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이하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
 2.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기점검)

- ① 관할 시·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기점검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며,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① 문화재청장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등재 및 조사 자료와 그 밖의 세계유산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세계유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운영)

-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세계유산 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2.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세계유산 협의회의 각 지역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 ①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

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칙, 정책, 지침 등 포괄적 해석 틀에 대한 연구 수행
 - 2.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 마련 및 기술 역량 기반 구축
 - 4.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 5.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 자료와 그 밖의 출판물 제작·보급
 - 6.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⑧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 1.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직접 관리를 요청해 올 경우
 - 2.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로서 국가의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할 경우
 -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세계유산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는 등 세계유산의 지위 유지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관리에 관한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관계기관의 협조)

문화재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 2. 세계유산 관련 기록의 작성·유지 및 정기점검
- 3. 협의회의 운영
- 4. 잠정목록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연구 및 추진활동
- 5. 세계유산의 등재·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국내외 교류 활동
- 6. 그 밖에 국내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3조(권한의 위임 ·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7587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 ① 문화재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설립위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설립위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록 2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 정 2009. 09. 24 예규 제77호
일부개정 2011. 04. 01 예규 제95호
일부개정 2014. 03. 11 예규 제132호
일부개정 2017. 03. 03 예규 제173호
일부개정 2017. 12. 13 예규 제18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사적의 종합정비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 ①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②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한 복원은 지양한다.
- ③ 문화재의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상황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및 방법 등

제4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정비계획은 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재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등이 관리단체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의 작성 등)

- ①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먼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방침
 2.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연구용역 또는 자체검토 등)
 3.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계획
 4. 추진일정
 5. 향후 시행방안
 6. 기타 추진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 ① 관리단체는 충실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에 관하여 이해가 깊고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참여가 가능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용역발주기관(관리단체)은 정비계획에 담아야 할 과업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포함한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업진행 초기단계부터 중요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중 시행하는 자문회의 및 각종 보고회(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등)에 대한 계획을 개최 10일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문단 구성을 비롯한 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

- ① 관리단체는 사적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해당 문화재의 성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에 대하여는 세계유산 정기보고 주기에 맞추어 6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 ②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시행 종료 이전까지 새로운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체계 및 내용 등)

- ① 정비계획의 수립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작성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에 따른다.
- ② 왕릉, 고분군 등이 동일한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정비계획의 수립은 사전에 해당 유적과 관련되는 인물, 문학, 회화, 건축, 구비전승, 음악 등 인문학적 고증자료를 지역 향토사학자 및 관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문헌적 형태로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적의 유형별·시대별·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재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적 사실과 연구고증을 바탕으로 보수·정비를 추진한다.
3.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타당성·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한다.
4.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사업 및 활용 등의 추진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5.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한다.
6. 사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외에도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활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문화재의 가치 및 효용성을 높인다.
7.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객관적 사고를 견지하여야 한다.
8. 사적과 그 세부유형별·종류별 문화재의 수리·복원·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한다.

제10조(사적 정비의 기본방침) 관리단체는 사적의 정비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기본방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 기존 사적이 더 이상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존·정비한다.
- 나. 사적이 붕괴 위험 등으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적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강 조치한다.
- 다. 사적의 일부가 손·멸실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존과 동일한 재료와 수법, 양식 등을 사용하여 원형에 충실히 보수 정비한다.
- 라. 사적의 특성과 그 보존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출 정비, 복토 정비, 보호구조물 설치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또는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비한다.
- 마. 사적의 복원은 그 본래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지양하고,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진정성 및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진한다.

제11조(사적 정비 시 고려사항) 관리단체는 정비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유적 및 유구의 정비

가. 지상부 유구 정비

- 1) 건물지의 초석, 기단석 기타 유구가 균열·파손·풍화가 심한 경우에는 과학적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 2) 건물지의 기단 및 계단의 경우에는 전체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변형·훼손된 부분만을 정비 한다.
- 3) 노출 유구 중 붕괴 및 이탈 우려가 있는 유구는 제자리에 정비한다.
- 4) 유구에 나무나 잡초, 기타 지장물(콘크리트 구조물 및 인위적인 시설물) 등이 있어 유구의 보전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며, 매장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이 있거나 유구의 교란이 우려될 경우에는 뿌리 제거는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5) 배수체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지반의 높이가 변형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획하여 정비한다.
- 6) 배수로는 되도록이면 인위적이지 않도록 자연측구(토사측구)로 계획하고 지형상 불가피하게 배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석축 배수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지하부 유구 정비

- 1) 유구의 보양 및 토사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잔디·지피식물 등을 식재할 수 있다.
- 2) 도굴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현 지형이 훼손된 경우에는 복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기존의 유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3) 사적 안의 지형이 복토 또는 절토로 인하여 원래의 지반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할 수 있다.
- 4)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예상되는 구역은 현 지반을 절토하거나 고르기 하면 아니 되며, 복토하여 표면 고르기 등의 정비를 할 수 있다.

2. 보호구조물(보호각, 보호책)의 설치

가. 사적 안의 유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호구조물의 구조, 형태 및 기능은 유구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2)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입방지시설이 갖추어진 보호책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호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호책의 높이와 형태는 보호대상 유구의 훼손정도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유구 훼손의 정도가 심하고 보호가 시급한 경우에는 유구지역을 주변 환경과 격리되도록 설치한다.
- 2) 설치위치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지장이 없고 관람 및 사진촬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정한다.
- 3) 보호책의 높이는 해당 문화재를 위압하지 아니하고 관람시야가 차폐되지 아니하도록 낮게 설치한다.

4) 같은 지역 안에 여러 점의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고 종합적으로 넓게 설치할 수 있다.

5) 보호구조물과 보호책을 설치할 때에는 유구로부터 일정간격 이격하여 유구를 훼손시키지 아니 하여야 하며, 재질·색깔 및 형태 등이 유구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변 환경정비

가. 수목의 제거

1) 유적 및 유구의 보존관리상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한다.

2) 전통수종 및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존 조치한다.

나. 표지 설치

유구의 중요한 지점에는 유구의 위치와 유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다. 조경 정비

1) 해당 유적 및 유구 안은 수목 식재 및 정원식 배치 등의 조경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상태로 보존한다.

2) 외래수종은 가급적 제거하고 전통수종으로 정비한다.

3) 조경식재는 사적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이나 식생 조사를 실시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라. 관람통로의 정비

1) 유구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람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적 안의 통로 및 마당 등의 기존 지반은 임의로 변형하지 아니 한다.

마. 경계울타리 설치

사적의 경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담장이나 기타 방법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4.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적 안의 문화재의 품위 및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관리사무소 설치

가. 사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시설에 문화재의 경관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해당 문화재(지정구역)나 문화재가 근접한 곳을 피하여 정한다.

6. 전시시설(전시관, 야외전시물)의 설치

가. 전시관은 유물조사를 선행하여 전시계획이나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문화재의 특성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및 형태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전시할 대상물 및 유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전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 사적안의 공간 활용을 위하여 야외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7. 문화재 소방방재시설의 설치

가. 사적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소화전, 소화기, 방화사 및 방화수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8. 문화재안내판 등의 설치

가. 문화재안내판은 해당문화재를 위압하지 아니하도록 적정 규모로 하며, 문화재의 경관 및 관람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사적의 구역이 광범위하거나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관람편의 및 문화재 홍보를 위하여 문화재안내판을 여러 장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다. 기타 문화재안내판의 디자인 및 안내문안 등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지침에 따른다.

제12조(정비계획의 협의)

- ① 관리단체는 자체검토 또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마련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단체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할 때에는 정비계획 보고서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약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문화재 일반현황
 - 가. 사적과 그 주변의 주요 현황
 - 나. 그 동안의 보수정비, 관리 및 활용 현황
 - 다. 현안사항
 - 2.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결과(실적이 있는 경우)
 - 3. 정비계획 개요
 - 가. 정비계획의 목적, 수립체계 및 진행경과
 - 나. 정비계획의 기본 원칙 및 방향
 - 다. 주요 정비계획 내용(대상별, 사업별)
 - 4. 관리 및 활용계획
 - 5.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③ 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심층검토를 위하여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관리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화재청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최종적으로 보완·확정하여야 한다.
- ⑤ 제20조에 따른 정비계획이 아니더라도 관리단체가 사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증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시행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정비계획의 공표)

관리단체는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정비계획의 시행**제14조(시행계획의 수립)**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정비사업의 추진)

- ① 관리단체는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근거로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추진상황의 점검)

- ①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사업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의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을 지도하고 독려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7호, 2009.9.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 2011.4.1.>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 2014.3.11.>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 2017.3.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

I. 계획의 개요

- 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작성한다.

II. 현황 조사

- ① 문화재와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을 작성한다.
- ② 문화재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실적을 작성한다.
- ③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재구역·보호구역·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④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하여 작성한다.(기준이 제정·고시된 경우)
- ⑤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과 현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⑥ 문화재의 활용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III. 계획의 기본구상

- ①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주요 대상별 정비(유적·유구 정비, 주변정비, 부대시설정비 등), 관리 및 활용(프로그램개발, 주민참여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 소방방재시설 등의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 ③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작성한다.

IV. 종합정비 방안

- ① 정비의 원칙, 보존·정비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관련법규(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학술조사(발굴조사 등 학술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불필요)의 목적, 대상·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④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범위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⑤ 유적 및 유구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⑥ 주변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조경, 석축·배수로, 경계울타리 등)와 편의·부대시설(안내소·매표소, 전시관·야외전시물,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다.

- ⑦ 소방방재시설(소방시설,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⑧ 문화재의 활용방안(관광·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컨텐츠 구축, 전시공간 이용 활성화 등)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V.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 ①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④ 관리운영인력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VI. 미래상 및 기대효과

- ① 학술적·사회문화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한다.
- ② 문화재의 생애주기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 ③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VII. 부 록

- ① 학술조사보고서, 고증자료 및 자문결과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보·참고한 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 ② 문화재구역·보호구역의 토지조사(필지별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등)를 첨부한다.

※ 사적의 종류, 성격, 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의 추가, 삭제, 수정 등 실정에 맞게 보고서의 구성 항목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부록 3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문화재청 고시 제2009-74호
2009년 9월 3일 제정

[서 문]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 등 문화유산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집약된 결정체로서 온전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한번 손상되면 원형을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유산이 가진 가치와 진정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유네스코(UNESCO),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등 국제기구는 기념물, 고고학적 유산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제현장과 권고안을 채택하여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수리복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해왔다.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와 복원에 관한 일반원칙’은 ‘베니스 현장’과 ‘진정성에 관한 나라(奈良)문서’ 등을 비롯한 기존의 국제현장과 원칙에서 정한 기준을 존중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마련된 기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바람직한 보존·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존을 통하여 국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일반원칙은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이하 유적이라 한다)의 수리와 복원 등에 관한 제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유적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의 바람직한 보존·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적 건축물(歷史的 建築物) : 과거에 형성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가치가 있는 건축유산
2. 유적(遺蹟) : 과거에 형성된 삶의 흔적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구조물 또는 장소
3. 보존(保存)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
4. 수리(修理)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대로 고치는 행위
5. 보강(補強)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전고히 하는 행위
6. 수복(修復) : 문화재의 원형을 부분적으로 잃거나 훼손된 경우 고증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행위
7. 복원(復原)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8. 이건(移建) :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다른 장소에 옮기는 행위

제3조(유적의 보존)

- ① 유적은 보존을 통하여 본래의 가치를 유지·전승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유적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유적의 체계적, 효율적 보존을 위하여 법적, 행정적 조치와 재정적 실천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4조(보존의 단계)

- ① 유적의 보존은 원형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원보다 수복이, 수복보다 수리가 권장된다.
- ② 수리·수복 및 복원의 차별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진정성과 완전성)

- ①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는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적의 가치를 변형·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유적의 가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일체로서 완전성을 갖추어야 하며 주변 및 전체와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6조(학술 연구와 기록)

- ① 유적의 가치와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고고학, 역사학, 건축학, 조경학, 민속학 등 관련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유적의 학술연구 결과 및 수리와 복원의 과정은 기록되어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수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역사적 흔적의 존중)

유적의 수리, 보강 또는 수복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시대의 흔적은 정당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제8조(수리의 원칙)

- ① 유적의 수리·보강 및 수복은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결손부분의 수리·보강 및 수복은 전체와 조화되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교체 및 보충재는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가역성)

유적의 수리, 보강 또는 수복 시에는 향후, 새로운 문현 및 유적의 발견, 연구결과의 축적,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에 의하여 수정 또는 이전 상태로의 환원이 가능하도록 가역성(可逆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0조(전통기술과 재료의 사용)

- ① 유적의 수리, 보강 또는 수복 시에는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유적의 안전과 내구성을 위하여 전통적 기술이 부적절하거나 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 또는 경험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된 현대기술과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구조보강은 유적의 모습 및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제3장 복원에 관한 사항

제11조(복원의 원칙)

- ① 복원은 고증에 의하여 충분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 ② 유적의 복원은 지상 또는 지하에 남아 있는 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복원의 제한)

유적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

제13조(이건의 제한)

유적의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이건은 유적의 안전과 보호 또는 원래의 위치로의 이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어야 한다.

제4장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적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 규와 지침 등에 따라 수리와 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자 및 관리자의 역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유적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점검 및 모니터링)

유적의 관리 시에는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7조(수리·복원 정보의 관리)

유적의 수리 또는 복원된 부분과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8조(재해예방 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리 시 재해대응을 위한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유적의 재해를 경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관련시설물의 설치)

관람자의 편의 및 유적의 관리를 위한 관련시설물 설치는 유적의 특성, 건물의 구성상의 균형, 주변 경관과의 관계 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관람환경의 조성)

유적의 관리자는 관람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유적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고려 사항)

- 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역사적 건축물의 수리에 있어서는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고려할 수 있다.
- ② 근대이후의 역사적 건축물의 수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특성과 활용방안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9월 3일 발효하였다.

부록 4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채택일: 1972년 11월 16일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는 1972년 10월 17일부터 동년 11월 21일까지 파리에서 제17차 회기로서 회합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본래의 쇠퇴의 원인뿐만 아니라 한층 무서운 손상 또는 파괴현상을 수반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회적 및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의하여서도 점점 더 파괴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 유의하고,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여하한 품목의 손괴 또는 손실도 세계 모든 국가유산의 유해한 빙곤화를 초래함을 고려하고,

이 유산의 국내적 차원의 보호가 이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보호될 재산이 위치하는 국가의 불충분한 경제적, 과학적 및 기술적 자원으로 인하여 종종 불완전하게 됨을 고려하고,

동 기구가 세계의 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확보하고, 관계 제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국제협약을 권고함으로서 지식을 유지, 증진 및 보급할 것을 동 기구의 현장이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문화재 및 자연재에 관한 현행 국제협약, 권고 및 결의가 이러한 진기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재산을, 그것이 어느 인민에 속하는지를 막론하고, 보호하는 것이 세계의 모든 인민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는 현저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류 전체의 세계유산의 일부로서 보존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의 거대함과 중대함에 비추어, 관계국에 의한 조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유효한 보충적 수단이 될 공동원조를 부여함으로써 동 유산의 보호에 참여하는 일이 국제사회 전체에 의무로서 지워져 있음을 고려하고,

이를 위하여 항구적 기초위에 현대의 과학적 방법에 따라 조직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협약의 형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긴요함을 고려하고,

제16차 회기중에 이 문제가 국제협약의 대상으로 될것을 결정하여,

1972년 11월 16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I.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것이 "문화유산"으로 간주된다.

기념물 : 건축물, 기념적 조각품 및 회화, 고고학적 성질을 가진 요소 또는 구조물, 비명, 동굴주거 및 조형물의 결합으로서 역사, 예술 또는 과학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건물의 집단 : 분리 또는 연결된 건물의 집단으로서 그의 건축술, 균질성 또는 풍경내의 위치로 인하여 역사, 예술 또는 과학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유적 : 인조물 또는 자연과 인공의 결합물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역사적, 미학적, 인종학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것이 "자연유산"으로 간주된다.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그 집단으로 구성된 자연적 조형물로서 미학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 및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위협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것.

자연유적 또는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제3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상기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자국영역내에 위치하는 다른 재산을 확인하고 범위를 정한다.

II.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적 보호 및 국제적 보호

제4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공개하고, 후세대에 전승하는 일을 보장하는 의무가 제1차적으로 자국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당사국은 자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모든 국제적 원조 및 협력, 특히 재정적, 예술적, 과학적 및 기술적 원조 및 협력을 얻어 최선을 다한다.

제5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가능한 한 각국에 적합한 대로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하여 공동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동 유산의 보호를 포함적 계획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정책을 채택함.
- 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공개를 위한 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직원 및 기능수행을 위한 수단을 가지는 1 또는 그 이상의 그러한 기관을 자국의 영역내에 설치함.
- 다. 과학적 및 기술적 연구 및 조사를 발전시키고 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법을 마련함.
- 라. 동 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에 필요한 적절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함.
- 마.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공개의 분야에 있어서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연수기관의 설치 또는 확충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장려함.

제6조

1.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그 영역내에 위치하는 국가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하며 또한 국내법에 규정된 소유권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 당사국들은 그러한 유산이 세계유산이며 그 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의무임을 인정한다.
2.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이 영역내에 위치하는 국가가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및 유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서 이 협약의 다른 당사국의 영역내에 위치하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여하한 고의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이 협약의 목적상,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제적 보호란 동 유산을 보존하고 확인하려는 협약당사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및 원조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III.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8조

1. 현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세계유산위원회"라 함)가 이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내에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의 통상회기 중에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 협약당사국에 의하여 선출되는 15개 협약당사국으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이 협약이 최소한 40개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후의 총회의 통상회기 일자로부터 21로 증가한다.
2. 동 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세계의 상이한 지역 및 문화가 형평하게 대표되는 것을 보장한다.
3. 동 위원회의 회의에는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의 연구를 위한 국제본부(로마본부)의 대표 1인, 국제기념물유적이사회(ICOMOS)의 대표 1인 및 국제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연맹(IUCN)의 대표 1인이 고

문의 자격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통상회기중 당사국회의에서 회합하는 협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여타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기구의 대표도 고문의 자격으로 동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9조

1.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의 임기는 위원국으로 선출된 총회의 통상회기의 종료일로부터 그 후의 제3차의 통상회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임명된 위원국중 3분의 1의 임기는 위원국으로 선출된 총회의 통상 회기 후 최초의 통상회기의 종료일에 만료되고 동시에 임명된 위원국중 다른 3분의 1의 임기는 위원국으로 선출된 총회의 통상회기후 제2차의 통상회기의 종료일에 만료된다. 이들 위원국의 국명은 최초의 선거후에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의 총회의장의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다.
3. 동 위원회의 위원국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분야의 적임자를 자국의 대표로 선정한다.

제10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2. 동 위원회는 특성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공적 또는 사적기구 혹은 개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도록 언제든지 초청할 수 있다.
3. 동 위원회는 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1.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가능한 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하고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일람표에 기재하기 적당한 것의 목록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목록은 최종적인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으며 당해재산의 소재지 및 중요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 동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목록에 기초하여 이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동 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비추어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간주하는 것의 일람표를 "세계유산일람표"라는 표제하에 작성, 개선 및 공표한다. 최신의 일람표는 최소한 2년에 1회 배포된다.
3. 세계유산일람표에 일정 재산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관계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이상의 국가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역내에 위치하는 재산의 기재는 분쟁당사국의 권리를 전혀 해하지 아니한다.
4. 동 위원회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세계유산일람표에 기재된 재산으로서 그 보존을 위하여 주요한 작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원조가 이 협약에 의거하여 요청되어온 것의 일람표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일람표"라는 표제 하에 작성, 개선 및 공표한다. 이 일람표는 그러한 작업의 견적서를 포함한다. 이 일람표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급속도의 손괴·대규모의 공적 또는 사적 사업 또는 급격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관광개발사업 등에 의한 멸실의 위협, 토지의 이용 또는 소유권의 변경에 기인한 파괴, 미상의 원인에 의한 중대한 변경, 각종의 이유에 의한 방기, 무력충돌의 발생 또는 위협, 재화 및 지각변동, 중대한 화재·지진·산사태, 화산의 분화, 수위의 변화·홍수 및 해일과 같은 중대하고도 특수한 위험에 처하여 있는 것에 한하여 동 재산을 기재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일람표에 새로운 기재를 행할 수 있고 그러한 기재를 즉시 공표한다.

5. 동 위원회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에 속하는 재산이 본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각 일람표에 기재될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한다.
6. 동 위원회는 본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두 일람표중 하나에의 기재요청을 거절하기 전에 당해 문화재 또는 자연재가 영역내에 위치하는 당사국과 협의한다.
7. 동 위원회는 관계국의 동의를 얻어 본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일람표의 작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조정하고 장려한다.

제12조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에 속하는 재산이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두 일람표중 어느 것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 재산이 이러한 일람표에 기재됨으로 인한 것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결코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3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하고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은 재산에 관하여 이 협약 당사국이 제출한 국제적 원조의 요청을 수리하고 검토한다. 그러한 요청은 당해 재산의 보호, 보존, 공개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예비조사의 결과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조 제1항에 의한 국제적 원조요청은 또한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확인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3. 동 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에 관하여 취하여질 조치를 결정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원조의 성질 및 정도를 결정하며 동 위원회를 대신하여 관계정부와 필요한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다.
4. 동 위원회는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그 순위의 결정에 있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각 재산의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서의 중요성, 자연환경 또는 세계인민의 재능과 역사를 가장 잘 대표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제적 원조를 제공할 필요성, 실시할 작업의 긴급성, 위협에 처한 재산이 영역내에 위치하는 국가의 가용자원 및 동 국가가 그러한 재산을 자력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도에 유념한다.
5. 동 위원회는 국제적 원조가 부여된 재산의 일람표를 작성, 개선 및 공표한다.
6. 동 위원회는 이 협약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금의 재원의 용도를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그 재원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유용한 조치를 취한다.
7. 동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국제적 및 국내적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한다. 동 위원회는 계획 및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구, 특히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의 연구를 위한 국제본부(로마본부), 국제기념물유적이사회(ICOMOS) 및 국제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연맹(IUCN) 뿐만 아니라 공적 및 사적단체 또는 개인의 원조를 구한다.
8. 동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위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행한다. 동 위원회 위원국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제14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국의 보좌를 받는다.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의 연구를 위한 국제본부(로마본

부), 국제기념물유적이사회(ICOMOS) 및 국제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연맹(IUCN)의 각자의 권한과 능력의 범위에 있어서의 역무를 최대한도로 이용하여 동 위원회의 문서 및 의사일정을 준비하고 그 결정의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IV.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

제15조

1.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세계유산기금"이라 함)이 이에 설치된다.
 2. 기금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재정규칙의 규정에 따라 신탁기금을 구성한다.
 3. 기금의 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 가. 이 협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납부되는 강제적 또는 자발적 분담금
 - 나. 다음의 실체에 의한 기부금, 중여 또는 유증
 - (1) 여타 제국들
 -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연합체 제내의 여타 기구, 특히 국제연합개발계획 또는 기타 정부간기구
 - (3) 공적 또는 사적 단체 또는 개인
 - 다. 기금의 재원으로부터의 이자
 - 라. 모금 및 기금을 위하여 기획된 행사에 의한 수입
 - 마. 세계유산위원회가 작성하는 기금의 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기타의 모든 재원
 4.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동 위원회가 획득할 수 있는 기타 형식의 원조는 동 위원회가 결정하는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다. 위원회가 특정의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 동 위원회는 동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기금에 대한 분담금에는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불일 수 없다.

제16조

1. 어떠한 보충적인 자발적 분담금도 해하지 아니하고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세계유산기금에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분담금의 액수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의 회기중에 개최되는 협약당사국총회에 의하여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정한 백분율의 형식으로 결정된다. 협약당사국총회의 이 결정에는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행하지 않은 국가로서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협약당사국의 강제적 분담금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통상예산에 대한 분담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다만, 이 협약 제31조 또는 제32조에 언급된 각국은 자국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에 자국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3.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행한 협약당사국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선언의 철회는 차기의 협약당사국총회의 기일까지 동 국가가 지불할 강제적 분담금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 동 위원회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행한 이 협약당사국의 분담금은 최소한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또한 동 분담금은 동 국가들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구속된 경우에 지불해야 했을 분담금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5. 해당연도분 및 역년에 의한 그 전년도분의 강제적 또는 자발적 분담금의 지불이 지체되고 있는 협약 당사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이 규정은 최초의 선거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 위원회의 위원국인 그러한 국가의 임기는 이 협약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시에 종료한다.

제17조

이 협약당사국은 이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부금을 요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공적 및 사적 재단 또는 협약의 설치를 고려하거나 장려한다.

제18조

이 협약 당사국은 세계유산기금을 위하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후원하에 조직되는 국제적인 모금운동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한다. 협약당사국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15조 제3항에 언급된 단체가 행하는 모금을 용이하게 한다.

V. 국제적 원조를 위한 조건 및 조정

제19조

이 협약의 어떠한 당사국도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하는 것을 위한 국제적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동국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국이 소유하고 있고 동 위원회의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21조에 규정된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한다.

제20조

제13조 제2항, 제22조 다호 및 제23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 규정된 국제적 원조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일람표의 하나에 기재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제공될 수 있다.

제21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국제적 원조의 요청을 검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결정하며 동 요청서는 검토된 사업, 필요한 작업, 그에 대한 예상경비, 긴급도 및 원조를 요청하는 국가의 자원으로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이유를 명기한다. 동 요청서에는 가능한 한 전문가의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재난 또는 자연재해에 기인된 요청은 긴급한 작업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에 의하여 즉시 또는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동 위원회는 그러한 우발사태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보유한다.

3. 동 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필요하다고 보는 연구 및 협의를 행한다.

제22조

세계유산위원회가 제공하는 원조는 다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가. 이 협약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에 의하여 제기되는 예술적, 과학적 및 기술적 문제에 관한 연구
- 나. 승인된 작업이 올바로 수행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기술자 및 숙련사의 제공
- 다.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의 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수준의 직원 및 전문가의 양성
- 라. 관계국이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입수할 처지에 있지 않은 장비의 공급
- 마. 장기반제가 가능한 저리 또는 무이자의 대부
- 바. 예외적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로 인한 반제를 요하지 않는 보조금의 공여

제23조

세계유산위원회는 또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의 분야에 있어서 모든 수준의 직원 및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국내적 또는 지역적 본부에 대하여 국제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대규모의 국제적 원조는 상세한 과학적, 경제적 및 기술적 연구 후에 제공된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을 위한 최고의 선진기술을 이용하며, 또한 이 협약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연구는 또한 관계국에게 획득 가능한 자원의 합리적 사용방법을 추구한다.

제25조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필요한 작업경비의 일부만을 부담한다. 국제적 원조를 받는 국가의 분담금은, 동 국가의 재원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계획 또는 사업에 충당되는 재원의 상당부분을 구성한다.

제26조

세계유산위원회 및 수혜국은 이 협약의 조건에 따라 국제적 원조가 제공되는 계획 또는 사업이 수행되는 조건을 양자간에 체결하는 협정내에 규정한다. 그러한 국제적 원조를 받는 국가는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그렇게 보호된 재산을 계속 보호, 보존 및 공개할 책임을 진다.

VII. 교육계획

제27조

1. 이 협약 당사국들은 모든 적절한 수단과 특히 교육 및 정보 계획에 의하여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존중심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2. 그들은 동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 및 이 협약에 따라 실시되는 활동을 널리 대중에게 주지시킬 것을 약속한다.

제28조

이 협약에 의하여 국제적 원조를 받는 이 협약 당사국들은 원조의 대상이 된 재산의 중요성 및 동 원조가 수행한 역할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VII. 보고서

제29조

1. 이 협약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가 결정한 일자 및 양식으로 동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있어서, 자국이 채택한 입법상 또는 행정상의 규정 및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취한 기타 조치에 관하여 이 분야에서 얻은 경험의 상세와 함께 정보를 제공한다.
2. 동 보고서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람에 부친다.
3. 동 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의 각 통상회기마다 제출한다.

VIII. 최종조항

제30조

이 협약은 아랍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되며 이들 5개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제31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회원국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되거나 수락되어야 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제32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가 가입을 초청한 동 기구 비회원국 모두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한다.

제33조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로부터 3개월 후 동 일자 또는 그 이전에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해서만 발효한다.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으로부터 3개월 후 발효한다.

제34조

다음의 규정은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의 헌법제도를 가진 이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그 실시가 연방 또는 중앙의 입법권의 법적 관할하에 있는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 또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그 실시가 연방의 헌법제도에 의하여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개별 구성국, 지방, 주 또는 군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동 구성국, 지방, 주 또는 군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동 규정의 채택을 위한 권고와 함께 동 규정을 통보한다.

제35조

1.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동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며 동 문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기탁된다.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접수로부터 12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폐기는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까지는 폐기를 행하는 국가의 재정상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6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동 기구의 회원국, 제32조에 언급된 동 기구 비회원국 및 국제연합에게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모든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그리고 제35조에 규정된 폐기를 통보한다.

제37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다만, 동 개정은 개정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만을 구속한다.
2.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새로운 개정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개정협약이 발효하는 일자로부터 이 협약은 비준, 수락 또는 가입에 개방되지 아니한다.

제38조

국제연합현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1972년 11월 23일 파리에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제17차 총회의장 및 동 기구 사무총장의 서명을 얻은 정본 2부를 작성하였고, 동 정본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그의 인증등본은 제31조 및 제32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및 국제연합에 송부된다.

(우리나라 발효일: 1988. 12. 14.)

부록 5

기념물과 유적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국제 헌장 (베니스 헌장, 1964)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The Venice Charter 1964)

제2차 국제 역사적 기념 건조물 건축가 및 전문가 총회, 베니스 1964년

1965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채택

수 세대에 걸쳐 인류가 이룩한 역사적 기념건조물은 오래된 전통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들이 되어 과거로부터의 메시지를 내포한 채 현재까지 남아 있다. 사람들은 인류 가치의 보편성에 대해 점점 더 자각하게 되었으며, 고대의 기념건조물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여기게 되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들의 진정성을 온전하게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고대 건물의 보존과 복원의 지침이 되는 원칙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마련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각 국은 자국의 문화와 전통의 틀 안에서 이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최초로 정의한 1931년의 아테네 헌장은 광범위한 국제 운동의 발전에 공헌하였고, 이 운동은 각국의 문서와 국제박물관협의회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업무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재 보존복원연구국제센터의 설립이라는 형태로 구체화 되었다.

인식의 고취와 비판적 연구의 수행으로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문제들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졌다. 이제 아테네 헌장이 담고 있는 원칙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새로운 헌장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아테네 헌장을 새롭게 점검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64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베니스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 역사적 기념건조물 건축가 및 전문가 총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하였다.

□ 정의

제1조

역사적 기념건조물의 개념은 단일 건축물 뿐 아니라 특정 문명, 중요한 발전 또는 역사적 사건의 증거가 발견된 도시나 농촌의 주변 환경까지 포함한다.

이 개념은 위대한 예술작품 뿐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문화적 중요성을 획득하게 된 과거의 보다 더 평범한 작품에도 적용된다.

제2조

기념건조물의 보존과 복원은 건축 유산의 연구와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과학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념건조물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목적은 역사적 증거 못지않게 예술작품으로서도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보존

제4조

기념건조물이 항구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념건조물의 보존에 필수적이다.

제5조

기념건조물의 보존은 기념건조물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때 더욱 촉진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활용은 바람직하지만, 이로 인해 건물의 배치 또는 장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만 기능의 변화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고 또한 허용될 수 있다.

제6조

기념건조물의 보존은 적절한 범위의 주변 환경 보전을 의미한다. 전통적 주변 환경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서나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고, 외형과 색채상의 관계를 변형시킬 수 있는 신축, 철거 및 변경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제7조

기념건조물은 그것이 증언하는 역사 및 그것이 발생한 주변 환경에서 분리될 수 없다. 기념건조물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거나, 국가적·국제적으로 중차대한 관심사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념건조물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8조

기념건조물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는 조각, 회화 혹은 장식의 경우,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보존의 유일한 방법이 될 때에만 기념건조물로부터 제거가 가능하다.

□ 복원

제9조

복원의 과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작업이다. 복원의 목적은 기념건조물의 미학적·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드러내는 것이며, 원래의 재료와 출처가 분명한 문서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두고 있다.

추측이 시작되는 순간, 복원은 중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추가 작업은 건축적 구성에서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고 당대의 작업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든지 기념건조물의 복원 전과 복원 후에는 해당 기념건조물에 대한 고고학적, 역사적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기념건조물의 보강에 있어 전통기법이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그 효능이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경험으로 검증된 현대적 보존 기법과 건축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양식의 통일이 복원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념건조물의 건설에 기여한 모든 시대의 요소가 존중되어야 한다. 만일 한 건물 내에 여러 시대의 작업이 겹쳐있을 경우, 최초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제거할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나, 드러날 부분이 역사적, 고고학적, 미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졌을 경우, 그리고 보전 상태가 이러한 작업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양호한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 관련된 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와 파기 대상에 대한 결정을 관련 작업의 책임자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제12조

없어진 부분에 대한 대체는 반드시 전체와 조화롭게 통합되어야 하고, 동시에 복원으로 인한 예술적 혹은 역사적 증거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원래의 것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제13조

건물의 중요한 부분, 전통적인 주변 환경, 건물 구성의 균형, 그리고 건물 주변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축이나 부가물을 설치하는 작업은 허용될 수 없다.

□ 역사유적

제14조

기념건조물의 유적은 유적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유적이 품위 있게 정비되고 개방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보존과 복원 작업은 앞 조문들에서 규정된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발굴

제15조

발굴은 1956년 유네스코가 채택하여 고고학적 발굴 시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제 원칙의 과학적 기준과 권고 사항에 맞추어 행해져야 한다.

폐허가 된 유적지는 반드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 건축적 특징 및 발견된 대상물에 대한 영구적 보존 및 보호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해당 기념 건조물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의미 왜곡 없이 이를 드러내어야 한다.

반면, 모든 추측에 의한 재건축 작업은 일단 배제되어야 한다. 오직 재조립, 즉 존재하지만 흩어져 있는 기존 부재를 다시 조립하는 것만 허용된다. 조립할 때 사용된 재료는 항상 식별 가능하여야 하고, 재료의 사용은 기념건조물의 보존과 그 형태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 출판

제16조

모든 보존, 복원 또는 발굴 작업에는 반드시 도면과 사진을 갖춘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보고서의 형태로 된 정밀한 문서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 안에는 작업 중에 확인된 기술적이고 형태적인 특징은 물론, 정비, 보강, 재구성 및 통합의 모든 단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야 하고,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출판할 것을 권장한다.

부록 6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1994)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994)

머리말

1. 일본 나라에 모인 우리 전문가들은 보존 분야에서 기존의 사고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문화적 유산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보존의 실무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 방법과 수단을 논의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포럼을 제공한 일본 당국의 호의와 지적 용기에 감사한다.
2. 우리는 또한 세계유산목록을 위해 제안된 문화재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사회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진정성을 시험하고자 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바람으로 제공된 토론의 장이라는 가치를 인식하고자 한다.
3.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는 현재 세계에 있어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데 부응하는 것으로, 1964년의 베니스 현장의 정신에서 비롯되며, 베니스 현장을 기초로 하고 있고, 베니스 현장을 확장하는 것이다.
4. 점점 더 세계화되고 일원화되는 세상에서, 때때로 공격적인 국가주의와 소수 문화에 대한 억압으로 문화 정체성을 위한 탐구가 추구되는 세계에서 보존 실무에 진정성을 고려함으로 인한 본질적인 공현은 인류 공유의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과 유산 다양성

5. 세계 문화와 유산의 다양성은 모든 인류를 위한 정신적, 지적 풍요로움의 대체될 수 없는 근원이다. 세계에서 문화와 유산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인류발전의 본질적인 측면으로서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6. 문화유산 다양성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존재하며, 다른 문화와 그들 신념체계의 모든 측면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문화적 가치가 상충하는 경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모든 상대방의 문화적 가치의 정당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7. 모든 문화와 공동체는 그들의 유산을 이루는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표현의 특별한 형태와 수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8. 개별 문화유산이 모두의 문화유산이라는 유네스코의 기본원칙은 중요하다.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과 관리는 우선 그것을 만들어낸 문화 공동체에 있고, 그 다음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공동체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에 더하여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발전된 국제 현장과 조약에 따라, 이들로부터 파생된 원칙과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 다른 문화 공동체의 요구와 자신의 요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근본적인 문화적 가치를 해치지 않는다면, 각자의 공동체를 위해 이러한 균형은 매우 바람직하다.

가치와 진정성

9. 모든 문화유산의 형태와 역사적 시대에 따른 문화유산의 보존은 그 유산에 부여된 가치에 그 뿐만 아니라 가치를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은 부분적으로 가치에 관한 정보의 출처가 신뢰성이 있거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달려있다.
문화유산 원래의 성격과 부여된 성격의 관계에 있어 이러한 정보의 출처와 그 의미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진정성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는데 필요하다.
10. 이러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베니스 현장에서 확인된 진정성은 가치에 관한 필수적인 자격 요소로 나타난다. 진정성의 이해는 세계유산조약과 다른 문화유산 목록을 위해 사용되는 등재 과정과 문화유산의 모든 과학적 연구, 보존과 복원 계획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11. 관련 정보 자료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산에 부여된 가치에 관한 모든 판단은 문화에 따라 심지어는 같은 문화 속에서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고정된 기준으로 가치와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모든 문화에 대한 존중은 그것이 속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유산을 고려하고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12. 그러므로 각자의 문화 속에서 유산 가치의 개별적인 성격과 관련 정보 출처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13. 문화유산의 본질, 문화적 맥락,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와 발전에 따라 진정성 판단은 정보 출처의 다양성에 달려있을 수 있다. 그 출처의 측면은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사용과 기능, 전통과 기술, 위치와 주변 환경, 정신과 느낌, 그리고 다른 내·외적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의 사용은 해당 문화유산의 세부적인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과학적 차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한다.

부록 1

추가제안(H. Stovel 제안)

1. 문화적, 유산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특정 기념물과 유적지의 진정성을 정의하거나 결정하는데 있어 기계적인 공식이나 표준화된 과정을 회피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2. 문화와 유산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성을 결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들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되는 분석 과정과 그 도구를 발전시키는 문화를 장려하는 접근법을 요구한다. 그러한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가진다.
 - 진정성 평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가능한 학제 간 공동 노력과 모든 전문가와 지식의 적절한 활용을 포함하려는 노력
 - 특정 기념물과 유적지에 부여된 가치는 한 문화의 대표성과 문화적 관심의 다양성을 진정으로 나타냄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
 - 향후 취급과 모니터링에 대한 실제적인 안내로서 기념물과 유적지에 대한 진정성의 특성을 확실히 기록하여 문서화하려는 노력
 - 변화하는 가치와 환경에 맞추어 진정성 평가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
3. 부여된 가치가 존중되는 것과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학제 간 그리고 공동체적 합의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는 노력이 특별히 중요하다.

4. 각 문화의 다양한 표현과 가치에 대한 전세계적 존중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국제적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고 촉진되어야 한다.
5. 세계 여러 지역과 문화로 이러한 논의를 계속하고 확산시키는 것은, 인류 공통의 유산을 보존함에 있어서, 진정성을 고려하는 실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선결 요건이다.
6. 과거의 흔적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 이르기 위해 대중 속에서 유산의 이러한 근본적인 차원에 대한 자각이 증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기념물과 유적지의 역할을 존중할 뿐 아니라 문화유산 자체에 의해 나타나는 가치를 점점 더 크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록 2

정의

보존 :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그것의 역사와 의미를 알고, 그것의 물질적 보호를 확실히 하고, 필요 시, 유산의 해설, 복원과 향상을 도모하는 모든 노력 (문화유산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념물, 건축물군과 유적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보 출처 : 문화유산의 본질, 세부사항, 의미와 역사를 알 수 있는 문헌, 구술과 회화를 포함한 모든 자료

부록 7

기념물, 건물군과 유적 기록에 관한 원칙(1996)

Principles for the Recording of Monuments, Groups of Buildings and Sites(1996)

문화유산은 인간 업적의 독특한 표현이고 지속적으로 위험에 처해있다. 기록은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 그 의미와 이해, 정의 및 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유지 보수의 책임은 그 소유주만이 아닌 보존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관리인, 정치인 및 정부 각급의 행정가 모두의 책임이며 또한 대중의 책임이다. 베니스 협정 제1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관기구와 개인들은 문화유산의 본질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문서의 목적은 문화유산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 책임, 계획 방법, 내용, 관리, 그리고 공유해야 할 고려 사항을 규명하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과 유산 다양성

문화유산은 역사적 혹은 건축 환경을 구성하는 유산 가치를 지닌 기념건조물, 건물군과 유적을 일컫는다. 기록은 어느 한 시점에서 기념건조물, 건물군 및 유적의 물리적 구성과 상태 및 용도를 묘사하는 정보를 포착하는 것으로 이는 보존 절차의 필수적 부분이다. 기념건조물, 건물군과 유적의 기록에는 유형은 물론 무형의 증거들이 포함되며 이는 유산과 그 유산에 관련된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줄 수 있는 기록화의 일부이다.

기록의 이유

1. 문화유산의 기록은 다음을 위해 필수적이다.
 - a) 문화유산과 그 가치 및 발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식의 습득
 - b) 기록된 정보의 확산을 통해 유산의 보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 촉진
 - c) 건축 작업 및 문화적 유산에 가해지는 모든 변화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관리와 통제를 실현
 - d) 유산의 물리적 형태, 재료, 건축기법 및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에 따른 유산 관리 보존
2. 기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상세하게 행해져야 한다.
 - a) 유산의 규명, 이해, 해석과 발표의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시민 참여 장려
 - b) 파괴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변형될 혹은 자연재해나 인간의 활동으로 위험에 놓인 모든 기념건조물, 건물군과 유적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 제공
 - c) 중앙 및 지방정부 혹은 지자체의 행정가 및 정책 입안자들이 민감한 도시계획 및 개발 통제 정책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d)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용도가 규명되고 효율적인 연구, 관리와 유지 보수 프로그램 및 공사가 계획될 수 있는 정보 제공

3.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문화유산의 기록은 최우선 사항으로 간주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 a) 전국적, 지방적 혹은 지역적 차원의 목록을 작성할 때
 - b) 연구와 보존 활동의 완전한 통합된 부분으로서
 - c) 수리, 변형 혹은 기타 개입 조치의 시행 전, 시행 중, 시행 후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적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 d) 전체 혹은 부분적 파괴, 파기, 유기 혹은 이전을 고려할 때, 혹은 유산이 인간이나 자연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손상의 위험에 처한 경우
 - e) 문화유산을 손상시키는 우연적 혹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혹은 그 이후
 - f) 관리와 통제에 대한 사용 또는 책임에 변화가 발생할 때

기록의 책임

1. 유산 보존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무는 기록 과정에 대해서 동등한 의무를 요구한다.
2. 기록과 해석은 복잡한 과정이므로 관련 업무에 대한 적절한 기술과 지식 및 인식을 가진 사람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3. 일반적으로 기록 과정에는 전문 유산 기록자, 조사자, 보존가, 건축가, 기술자, 연구자, 건축역사학자, 지상 및 지하 유물 관련 고고학자 및 기타 전문 자문인 등 필요한 기술을 갖춘 개인들 간의 상호 협력이 포함된다.
4. 모든 문화유산 관리자들은 적절한 기록 및 기록의 질 그리고 최신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록계획

1. 새로운 기록을 준비하기에 앞서 기존의 정보원에 대한 탐색 및 적절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a) 건물과 건물군 혹은 유적의 기원과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사자료, 도면, 사진, 발간 혹은 미발간 기록 및 기술 그리고 관련 문서를 통해 해당 정보를 담고있는 기록의 유형을 탐색해야 한다. 최근은 물론 오래된 기록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b) 기존의 기록들은 국립 혹은 지방의 기록보관소, 전문기관이나 기구 혹은 개인의 기록물, 목록, 소장품 그리고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c) 기록들은 건물이나 건물군 같은 유적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이들을 기록, 시공, 보존하고 있거나 연구 또는 이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통해 찾아야 한다.
2. 상기 분석을 토대로 기록의 적절한 범위, 수준과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 a) 기록의 방법과 이에 따라 산출된 문서의 형태는 유산의 본질, 기록의 목적, 문화적 배경, 기금 혹은 기타 활용 가능한 차원에 적절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의 제약으로 인해 단계적 기록 방식이 요구될 수도 있다. 그러한 방법에는 기록된 기술과 분석, (지역이나 영역의) 사진, 사진 보정술, 사진 측량술, 지리조사, 지도, 측정 계획, 도면과 스케치, 복제물 혹은 기타 전통 및 현대 기술들이 있다.
 - b) 기록은 가능하다면 비침습적 기법을 이용해야 하며 기록 대상물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 c) 의도된 범위와 기록 방법에 대한 근거는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d) 최종 기록을 종합할 때 사용되는 재료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보관 가능해야 한다.

기록의 내용

1. 모든 기록은 다음의 사항으로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a) 건물, 건물군의 명칭
 - b) 고유의 식별 번호
 - c) 기록의 편찬일
 - d) 기록의 기관명
 - e) 관련 건물 기록 및 보고서, 사진, 도해, 문헌적 혹은 서지학적 문서, 고고학적 및 환경적 기록과 관련된 참조목록
2. 기념건조물, 건물군 혹은 유적의 위치와 범위는 정확히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 지도, 계획서 혹은 항공 사진이 이용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지도를 참조하거나 알려진 지점을 기준으로 삼각측량을 하는 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주소나 거리명만으로도 충분하다.
3. 새로운 기록은 기념건조물, 건물군 혹은 유적 그 자체로부터 직접 수집되지 않은 모든 정보에 대해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4. 기록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모두 혹은 일부 포함해야 한다.
 - a) 건물, 기념건조물 혹은 유적의 유형과 형태와 치수
 - b) 기념건조물, 건물군 혹은 유적의 내부 및 외부 특성
 - c) 유산과 그 구성요소의 본질, 우수성, 문화적·예술적·과학적 의미, 그리고 아래의 것들이 갖는 문화적·예술적·과학적 중요성
 - 재료, 구성 부품 및 구축, 장식, 장신구, 비문
 - 서비스, 비품과 기계류
 - 부속 구조물, 정원, 경관 그리고 유적의 문화적, 지형학적, 자연적 특성
 - d) 건축 및 유지 보수에 사용된 전통적 현대적 기술 및 기법
 - e) 건립 시기, 건립자, 소유자, 최초 설계, 범위, 용도와 장식을 규명할 증거들
 - f) 유산의 용도, 관련 사건, 구조적 혹은 장식적 변형 그리고 인간 및 자연의 외부적 힘으로 인한 영향 등에 따른 이후의 역사를 규명할 증거
 - g) 관리, 유지 보수와 수리의 역사
 - h) 대표적인 건축 요소 혹은 표본 혹은 현장 소재들
 - i) 유산의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
 - j) 유산과 그 주변 환경 사이의 시각적, 기능적 관계에 대한 평가
 - k) 인간이나 자연 그리고 환경오염이나 인접한 토지의 이용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에 대한 평가
5. 기록의 상이한 이유(위의 1, 2 조항 참조)를 고려할 때, 상이한 수준의 세부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심지어 간결하게 언급된다 할지라도 위에 나타난 모든 정보는 지역의 계획과 건물 통제 및 관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유적이나 건물의 소유주,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보존, 유지 보수와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의 관리와 배포 및 공유

1. 원본은 안전한 보관소에 보관되어야 하고 보관소의 환경은 반드시 공인된 국제적 표준에 맞는 정보의 영구성과 부식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
2.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기록에 대한 전체 사본이 보관되어야 한다.
3. 적법한 기관과 관련 전문가 그리고 대중들은 연구, 개발, 통제, 기타 행정적, 법적 절차를 목적으로 기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4. 유산에 대한 연구, 관리, 유지 보수 및 재해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록의 업데이트는 가능한 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기록 양식은 표준화되어야 하며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의 정보교류와 검색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곳에 색인을 표시해야 한다.
6. 기록된 정보의 효율적인 취합, 관리, 배포는 가능하다면 최신 정보 기술을 이해하여 적절히 사용하도록 한다.
7. 기록의 위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8. 모든 기록의 주요 결과는 보고서로 배포되고 발간되어야 한다.

부록 8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진정성과 역사적 재건¹⁾에 관한 리가 협장 (2000)

Riga Charter on Authenticity and Historical Reconstruction in Relationship to Cultural Heritage(2000)

세계문화유산보존및복구연구센터(ICCROM) / 유네스코 라트비아 위원회 / 라트비아

국가유산보호청

[협력기관: 세계유산위원회 및 라트비아 문화자본재단]

2000년 10월 23~24일 라트비아 리가

우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세계문화유산보존 및 복구연구센터(ICCROM), 캐나다, 미국, 영국 동료들과 함께, 유네스코 라트비아위원회와 라트비아 국가유산보호청의 초청으로 세계유산위원회와 라트비아 문화자본재단의 협조를 얻어 세계문화유산보존 및 복구연구센터(ICCROM)가 시작한 ‘문화유산 진정성과 역사적 재건에 관한 지역 회의’를 위해 2000년 10월 23~24일 간 라트비아 리가에 모여,

베니스현장(1964)을 비롯한 기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규범들, 즉 버라현장(1979), 피렌체 현장(1981), 드레스덴선언(1982), 로잔현장(1990), 나라문서(1994)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1972) 및 유네스코 나이로비 권고(1976)와 같은 국제 문서에서 문화유산의²⁾ 재건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단, 이러한 국제 문서에서도 장소의 보존을 위해 재건이 필요한 경우, 훼손 또는 변형 때문에 장소가 불완전한 경우, 재건이 장소의 문화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경우, 또는 자연재해나 인재 때문에 발생한 처참한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고, 재건은 어떠한 경우라도 추측에 의존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유적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재건된 부분은 구분 가능하고 되돌릴 수 있으며 유적지의 보존과 해설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특히 최근에 독립한 국가에서는 재건에 관해 현재 계획되었거나 실현되고 있는 수많은 사업 제안들 때문에 재건과 진정성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유형이든 무형이든 문화유산은 과거 인간 활동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가치가 있고, 설사 보호 목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개입은 불가피하게 이러한 증거로서의 문화유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1) 재건: 예전 형태의 환기, 해석적인 재건 또는 복제

2) 문화유산: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념물, 건축물 및 유적지 집단,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경관 등

2. 역사적 시기마다 이전에 사용한 언어와 표현 방식과는 다른, 해당 시기만의 양식이³⁾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존 조치의 초점은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수에 맞춰져야 한다.
3. 보존⁴⁾ (또는 재건)의 목적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4. 진정성은 문화유산의 특징(형태 및 디자인, 재료 및 속성, 사용과 기능, 전통 및 기술, 위치 및 환경, 정신 및 느낌, 다른 요인 등 포함)이 해당 유산의 가치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보여주는 정도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5. 문화유산의 복제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증거를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유사하게 지은 새 건물도 환경적인 맥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건축물은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의견도 제시한다.

6. 관련 기념물이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예술적, 상징적 또는 환경적(도시이든 시골이든) 가치가 탁월할 때 자연재해 또는 인재로 손상된 문화유산의 재건은 허용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 적절한 조사 및 사료가 있을 것(상징물, 문서, 물질 증거 포함)
 - 재건으로 전반적인 도시 또는 경관 맥락이 훼손되지 않을 것
 - 현존하는 중요한 역사적 물질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

또한 국가 및 지역 당국 그리고 관련 공동체와 공개적인 협의를 충분히 거친 이후 재건 필요성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7. 모든 관련 국가 및 행정부는 동 문서와 동 문서의 형성 배경을 제공한 문서를 국가 및 지역 정책과 관행에 포함시키고, 모든 관련 학술 기관은 동 문서를 그들이 진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 한다.

3) 양식은 문화유산의 형태적, 예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4) 보존: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그 역사와 문화를 알고, 물리적인 보호를 담보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전시, 복원,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포함한다.

부록 9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현장

- 건축 유산의 분석, 보존과 구조적 복원에 대한 원칙(2003)

ICOMOS Charter - Principles for the Analysis, Conservation and Structural Restor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2003)

원칙

문서의 목적

건축 유산의 구조물을 그 성격과 역사(재료와 조합), 진단과 복원 작업에 있어 현대적 법규와 건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제기한다.

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합리적 분석 및 보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권고가 필요하고 요망된다.

이 권고는 보존과 복원 문제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게 유용하도록 마련되었지만, 어떤식으로도 문화 및 과학적 맥락 속에서 획득된 구체적 지식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완성된 문서에 제시된 권고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곧 보존의 기본 개념을 제시한 원칙과 설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과 방법이 논의된 지침서이다.

이 가운데 원칙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문서로 승인되어 비준되었고, 지침서는 별도 영어 문서로 작성되었다.

1. 일반기준

1.1 건축 유산의 보존, 보강, 복원은 다양한 학문의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1.2 건축 유산의 가치와 진정성은 고정된 기준에 근거할 수 없다. 이는 모든 문화에 대한 존중이 필요 하듯 물리적 유산은 그것이 속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3 건축 유산은 그 시대의 특정한 건설기술을 이용한 고유한 산물로서, 그 가치는 비단 외관 뿐 아니라 모든 구성 요소의 완전성에 달려있다. 특히 외관만을 유지시키고 내부구조를 제거하는 것은 보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1.4 건축물의 용도 혹은 기능 변화를 제안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보존 요건과 안전 조건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1.5 건축 유산의 구조물을 복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물 전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1.6 유산 구조물의 독특함과 복잡한 역사를 인해 유산 구조물에 대한 연구 및 제안서를 작성할 때에는 의학에서 쓰이는 방법과 유사한 정밀한 단계가 요구된다. 즉, 병력과 진단, 치료, 통제는 각각 중요 데이터와 정보의 검색, 손상과 부식에 대한 개별적 원인 분석, 복구 조치의 선택 그리고 개입

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관리에 대응한다.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고 건축 유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단계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일이 연구에 요구된다.

- 1.7 건축 유산은 달성할 수 있는 이득이나 해가 확인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단 당장 구조물이 붕괴될 상황(가령 지진으로 인한 손상 등)을 피하기 위해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조치도 가능하다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구성 조직을 변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2. 연구와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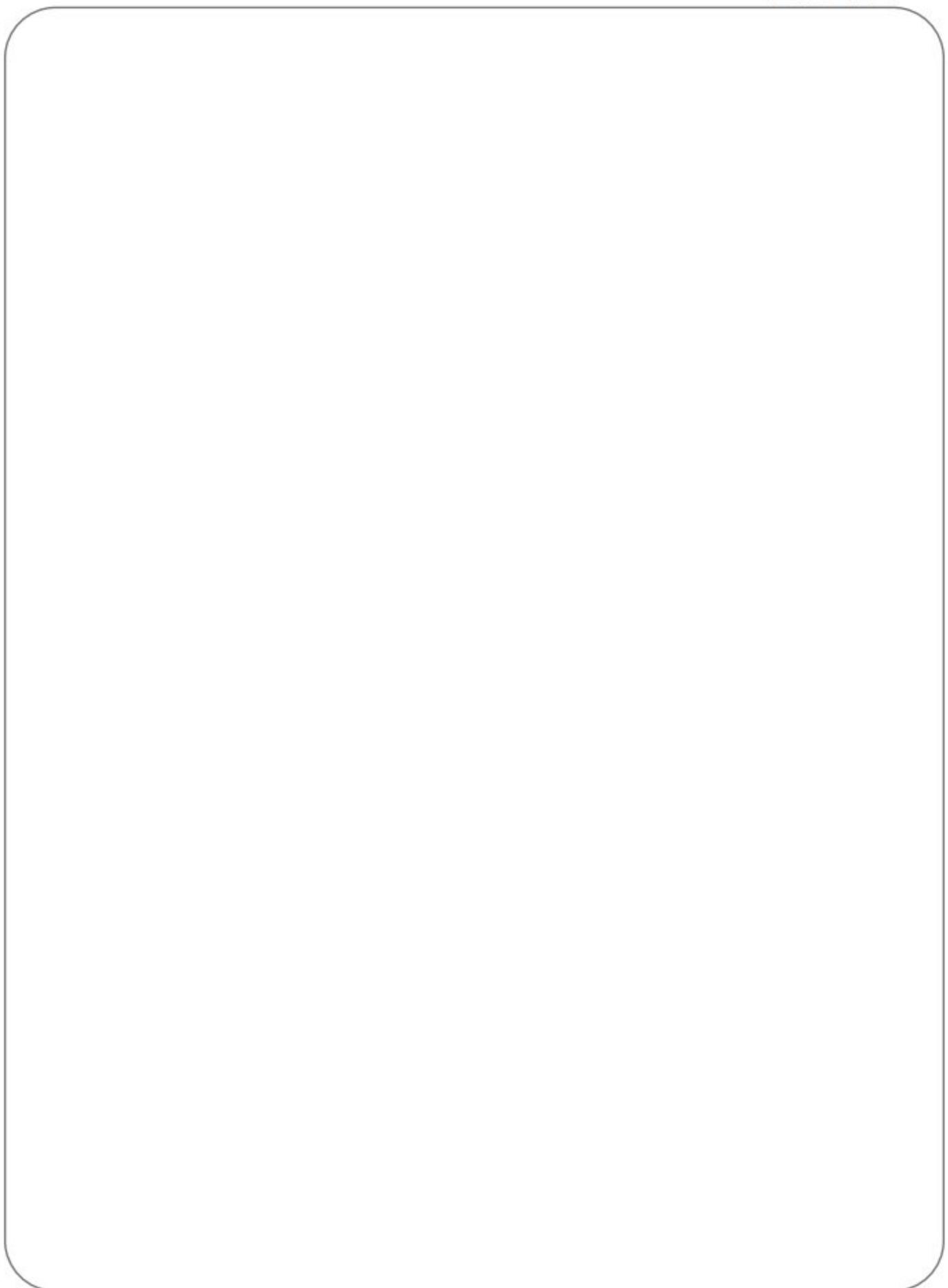
- 2.1 여러 학문 분야로 이루어진 팀은 대개 문제의 유형 및 규모와 관련되어 그 구성이 정해지며, 1차 현장조사와 조사 작업 준비 등 연구의 첫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야 한다.
- 2.2 데이터와 정보를 먼저 대략적으로 처리한 후 구조물의 실제 문제점에 맞추어 보다 종합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 2.3 보존 작업은 구조와 재료의 특성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구조물에 대한 최초와 초기 상태, 건설에 사용된 기법, 변형과 그 영향, 이제까지 발생한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 2.4 구조물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에 대한 안정화 조치를 발굴 중에 취해야 하는 고고학적 유적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재발견된” 건물에 대한 구조적 대응은 “노출된” 건물에 대한 구조적 대응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발굴된 상태로 구조물을 안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현장 구조 조치는 전체 건물의 개념과 형태, 용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2.5 진단은 역사적, 정성적, 정량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정성적인 접근은 주로 구조적 손상과 재료의 부식에 대한 직접적인 고찰 및 역사적, 고고학적 연구에 기반하고, 정량적인 방식은 주로 재료와 구조에 대한 테스트, 모니터링 그리고 구조 분석에 기반한다.
- 2.6 구조적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먼저 손상과 부식의 원인을 판정하고 구조물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 2.7 진단의 마지막 단계는 안정성 평가로서 조치행위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즉 직접적 관찰, 역사적 조사, 구조분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실험과 테스트 등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2.8 신축 건물 설계와 동일한 안전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요구가 되기 쉽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분석과 적절한 고려를 통해 안전에 대한 대체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 2.9 획득된 정보, 안정성 평가 등의 진단 및 개입에 대한 결정의 모든 측면이 “설명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3. 복구조치와 관리

- 3.1 보수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
- 3.2 최상의 보수는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이다.
- 3.3 안정성 평가와 구조물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보존과 보강 조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 3.4 불가피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치도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

- 3.5 모든 개입 조치는 명시된 안전성 목표에 맞춰야 하고, 유산적 가치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성과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 범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 3.6 개입 조치를 계획할 때에는 개입조치 후에 구조물의 분석에 고려해야 할 활동뿐만 아니라 손상과 부식의 원인이 되었던 활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에 따라 개입 조치가 다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 3.7 전통적 기법과 혁신적 기법 사이에서 선택은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요건을 염두에 두고 사안별로 선택하되, 최소한의 개입과 유산의 가치와 잘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한다.
- 3.8 실제 안전 수준과 개입 조치에 따른 이득을 평가하기 어려울 경우 “관측 설계법”, 즉 최소한의 개입 조치로 시작했다가 이후 일련의 보충 혹은 보정수단을 필요에 따라 채택하는 점증적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 3.9 적용되는 모든 수단은 가능하다면 “가역적”이어서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었을 때 제거되거나 더 적절한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다고 해서 더 이상의 개입 조치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3.10 복원 작업에 이용되는 재료(특히 새로운 재료)의 특성과 기존 재료와의 양립성이 충분히 밝혀져야 한다. 특히 달갑지 않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3.11 구조물과 그 환경이 최초에 또는 초기에 가지고 있던 특징적인 성격은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 3.12 모든 개입 조치는 구조물의 최초 또는 초기 상태의 개념, 기법,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개입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미래에도 인지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 3.13 개입 조치는 건축, 구조, 설치, 기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한 전체적으로 통합된 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3.14 모든 역사학적 재료 또는 독특한 건축적 특징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 3.15 노후화된 구조물은 교체되기보다 가능하다면 보수되어야 한다.
- 3.16 분해와 재조립은 재료와 구조물의 성격상 다른 수단에 의한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해로울 때 선택적인 수단으로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 3.18 개입조치 시행 중에 사용된 임시보호체계는 유산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 목적과 기능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 3.19 개입조치를 위한 모든 제안에는 개입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관리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 3.20 실행과정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수단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 3.21 개입 결과의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개입 조치를 취할 당시와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 3.22 모든 점검과 모니터링 활동은 구조물 역사의 일부로 문서화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NOTE



2021년 제2차 백제왕도핵심유적 정책연구포럼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고증연구의
개선방안 모색**

백제왕도핵심유적 정책연구포럼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고증연구의 개선방안 모색